

13~14세기 英國農民의 相續慣習*

—Cuxham 莊園 村落을 중심으로—

金 豪 然**

- | | |
|------------------------------|-------------------------|
| I. 머리말 | III. 빌농(cottager)의 상속관습 |
| II. 관습보유농(villein)의 상속
관습 | IV. 혹사명이 미친 영향 |
| | V. 맷음말 |

I. 머리말

중세 농민들에게 一家의 보유지와 그 보유지에 대한 가족 구성원들의 권리라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로 그같은 문제는 당시대의 상속관습에 생생하게 반영되어 있으며, 아울러 그같은 상속관습은 당시대에 작성된 기록 문서들 속에 풍부히 내재되어 전해지고 있다. 그런데 이들 문서를 통한 당시대의 상속관습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1940년대 호만스(G. C. Homans)로부터 시작되었다.¹⁾ 호만스는 13세기의 여러 문헌을 분석하여 농민보유지가 혈연에 의하여 상속되었다는 사실과 미들랜드(Midlands) 지역에서는 장자상속제가 지배적이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²⁾ 이같은 호만스의 연구에

*본 논문은 1986년도 대우재단의 Post-Graduate 장학연구지원에 의함.

** 사학과 전임강사.

- 1) G. C. Homans, *English Villagers of the Thirteenth Century* (Harvard U.P., 1941). 호만스는 광범위하고 다양한 중세시대의 촌락문서로 부터 사회인류학적인 분석에 의하여 당시대의 종체적인 촌락모습을 연구했던 선구자로 평가되고 있다. Homans의 업적에 대한 평가는 Raftis와 Faith의 저서와 논문 속에 잘 나타나 있다. J. Ambrose Raftis, *Tenure and Mobility: Studies in the Social History of the Mediaeval English Village*(Toronto, 1964), p. 13; Rosamond Jane Faith, "Peasant Families and Inheritance Customs in Medieval England," *Agricultural History Review*, 14(1966), p. 77.
- 2) G. C. Homans, *Ibid.*, pp. 109~132, 195~207. 호만스는 자선의 주장을 다음 논문에서 더욱 명확히 밝히고 있다. "The Rural Sociology of Medieval England," *Past and Present*, 4(1953), pp. 33~36.

대하여 일부 연구자들이 비판과 수정을 가하기는 하였으나,³⁾ 호만스의 연구는 그 후에도 여전히 중세 영국농민의 상속 연구에 중요한 기초가 되어왔다. 호만스 이후 중세 농민에 대한 상속 연구는 50년대와 60년대에 크게 전개되었으며, 70년대 부터는 가족, 토지 그리고 상속의 문제들이 다양한 방향과 시각에서 서로 연관을 맺으면서 연구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⁴⁾ 특히 이를 문제들이 한 지역이나 또는 영지 단위로 연구됨으로써 최근에는 더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연구성과가 나타나고 있다.⁵⁾

3) 호만스의 이론에 대한 주요한 비판은 분할상속과 비분할상속에 대한 지역구분의 문제와 家보유권에 대한 가족구성원들의 권리문제 등이 있다. 전자의 대표적인 예는 R. J. Faith의 앞 논문이며, 후자의 대표적인 예는 Alan Macfarlane, *The Origins of English Individualism*(Oxford, 1978)이다.

4) 상속관습과 연관되어 가족, 토지, 경작제도, 토지거래 등을 다루고 있는 주요 서서와 논문들은 다음과 같다.

G. C. Homans, "The Rural Sociology of Medieval England"; H. E. Hallam, "Some Thirteenth-Century Censuses," *Economic History Review*, 2nd Series, x(1958); J. Z. Titow, "Some Differences between Manors and their Effects on the Condition of the Peasants in Thirteenth Century," *Agric. Hist. Rev.*, 10(1962); J. A. Raftis, *Tenure and Mobility: Studies in the Social History of the Medieval English Village*; Alan R. H. Baker, "Open fields and Partible Inheritance on a Kent Manor," *Econ. H.R.*, 2nd ser., xvii(1964); J. Thirsk, "The common Fields," *Past and Present*, 29(1964); 33(1966); J. A. Raftis, "Social Structures in Five East Midland Villages: A study of possibilities in the use of court roll data," *Econ. H.R.*, 2nd ser., xviii(1965); J. Z. Titow, "Medieval England and the Open-field System," *Past and Present*, 32(1965); Rosamond Jane Faith, "Peasant Families and Inheritance Customs in Medieval England"; Barbara Dodwell, "Holdings and Inheritance in Medieval East Anglia," *Econ. H.R.*, 2nd Ser., xx(1967); George C. Homans, "The Explanation of English Regional Differences," *Past and Present*, 42(1969); Rodney Hilton, *Bond Men made Free: Medieval Peasant Movements and the English Rising of 1381*(London, 1973); P. R. Hyams, "Origins of a Peasant Land Market in England," *Econ. H.R.*, 2nd ser., xxiii(1970); Cicely Howell, "Peasant Inheritance Customs in the Midlands, 1280—1700," Jack Goody, Joan Thirsk and E. P. Thompson eds., *Family and Inheritance: Rural Society in Western Europe 1200—1800*(Cambridge, 1976); Alan Macfarlane, *The Origins of English Individualism*(Oxford, 1978); Zvi Razi, "Family, Land and the Village Community in Later Medieval England," *Past and Present*, 93(1981); P. D. A. Harvey ed., *The Peasant Land Market in Medieval England* (Oxford, 1984).

5) 대표적인 주요 연구성과는 다음과 같다. P. D. A. Harvey, *A Medieval Oxfordshire Village: Cuxham 1240—1400*(London, 1965); E. B. Dewindt, *Land and People in Holywell-cum-Needingworth* (Toronto, 1972); J. A. Raftis, *Warboys: Two Hundred Years in the Life of an English*

본고는 이같은 영구성과들을 바탕으로 13세기 후반부터 14세기 중반에 이르는 기간 동안 한 촌락에 대한 기록들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개별 농가의 상속실태를 파악하고 그것을 통하여 당시대의 상속관습을 이해하려는 하나의 시도이다.

본고가 검토하려는 촌락은 남부 미들랜드에 속하는 Oxfordshire Cuxham 장원촌락이며,⁶⁾ Cuxham 장원에 대하여 자세한 기록이 남아 있는 것은 그 장원을 Merton College 가 소유한 후 직접 경영하였던 1272년부터 1359년까지 약 90년 동안이다.⁷⁾ 1세기 미만에 걸치는 하나의 장원기록을 통하여 중세 영국농민의 상속관습에 대한 모든 사항들을 밝혀낼 수 없음은 물론이다. 그렇지만 Cuxham 장원문서는 중세의 전성기로부터 혹사명 이후 사회경제적인 대변혁의 초기까지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서를 통하여 중세 영국농민의 전형적인 상속관습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그같은 전형적인 상속관습이 혹사명 이후 급격한 사회변동 속에서 어떻게 변화되어 갔는가도 알아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기록들은 Merton College 기념관 문서고 속에 소장되어 있는 장원법정문서(Manorial Court Rolls), 장원회계문서(Manorial Account Rolls), 세금사정서(Tax Assessments), 재산매매증서(Charters)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976년 하비(P. D. A. Harvey)에 의하여 간행되었다.⁸⁾ 본고는 이를 기록문서를 가

Medieval Village (Toronto, 1974); Cicely Howell, *Land, Family and Inheritance in Transition: Kibworth Harcourt 1280—1700* (Cambridge U.P., 1983).

6) 이 촌락은 유크스포드에서 남동쪽으로 12마일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촌락의 면적이 1평방 마일도 채 안되는 작은 촌락이다. 이 촌락은 중세시대에 단일 장원으로 구성되어 촌락의 경제와 장원의 경제가 일치하였으며, 교구의 경제까지도 일치했던 마을이다. 이 장원은 1271년 세속 영주가문에서 Merton College 에 기증되어 그 후 College 의 소유재산이 되었다. P.D. A. Harvey, *A Medieval Oxfordshire Village*, pp. 1~9 참조.

7) 이 기간 동안 College 는 장원관리인을 통하여 장원을 관리하고 그 기록을 남겼다. 그러나 혹사명 이후인 1359년부터는 직접경영의 어려움 때문에 파머(farmer)에게 임대하였기 때문에 장원경영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고 있다. *Ibid.*, pp. 11~13.

8) P. D. A. Harvey ed., *Manorial Records of Cuxham, Oxfordshire circa 1200—1359* (Oxfordshire Record Society, No. 50, 1976)

운데에서도 특히 1279년~1358년 사이의 장원법정문서, 1276년~1359년 사이의 장원회계문서, 그리고 1295년~1328년 사이의 세금사정서를 검토하여 Cuxham 장원농민들의 상속관습을 고찰할 것이다.

II. 관습보유농(Villein)의 상속관습

1. 관습보유농의 구성

Cuxham 촌락민은 1297~98년 이후 13인의 관습보유농(villein), 8~9인의 빈농(cottager)으로 구성되어 있다.⁹⁾ 그런데 이들 가운데 관습보유농은 1278~82년에는 8인이었던 것으로 나타난다.¹⁰⁾ 따라서 1278~82년 이후 1297~98년 사이에 5가구의 관습보유농이 더 형성된 것이다. 그런데 새로이 생겨난 5가구의 관습보유농은 모두 1290년대에 $\frac{1}{2}$ 버게트의 토지를 부여 받아 빈농에서 관습보유농이 된 사람들이이다.¹¹⁾ 이들은 1290~91년에 3가구¹²⁾, 1291~92년에 1가구가 새로이 형성되었으며¹³⁾, 나머지 1가구는 1292~93년에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¹⁴⁾ 이 시기에 Cuxham 촌락에서 새로운 관습보유농들이 형성될 수 있었던 것은 Merton College가 장원을 인수한 이후 꾸준히 추진해 오던 장원의 통합정책이 성공하여 Greene 家를 제외한

9) 표 1, 표 3 참조. 관습보유농은 $\frac{1}{2}$ virgate(12 acre)의 토지를 보유하고 부역의 의무가 있었던 농민이었고, 빈농은 cottage 와 이에 떨어 몇 에이커의 토지만을 보유했던 농민이었다.

10) MM 5906 mem. 1 dorse (MM=muniments of Merton College, Oxford. mem.=membrane). 1279년 Hundred Rolls에 나타나는 관습보유농의 수도 8인이었다. P.D.A. Harvey, *A Medieval Oxfordshire Village*, p.113.

11) 1297~98년의 Custumal을 보면 이들은 다른 관습보유농들보다 집터와 $\frac{1}{2}$ 에 이커의 토지를 하나씩 더 가지고 있었으며, cottage에 대한 지대와 부역의 의무도 있었음을 알 수 있다(MM 5899).

12) MM 5809.

13) MM 5810.

14) 1292~93년의 장원회계문서가 존재하지 않고 있는데, 아마도 이 문서에 새로운 1명의 관습농에 대한 토지보유허가세가 기록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표 1> 관습보유농 명부

보유농가	현 지	1295년 MM 2852	1296년 MM 4122 dorse	1297~8년 MM 5899	1304년 MM 5905
Aumoner 家	Gilbert Aumoner	Gilbert Aumoner	Gilbert Aumoner	Gilbert Aumoner	Gilbert Aumoner
Beneyt 家	Cecilia	Cecilia	Cecilia	—	—
Bovecheriche 家	Richard Bovecheriche	Richard near the Church	Richard Bovecheriche	Richard Bovecheriche	Richard Bovecheriche
Brian-Carter 家	Thomas Brian	Thomas Brian	Thomas Brian	of Thomas Brian	Adam Brian
Est 家	Richard Est	Richard Est	Richard Est	Richard Est	Richard Est
Hethe-Canon 家	Adam atte Hethe	Adam atte Hethe	Adam atte Hethe	Adam atte Hethe	Adam atte Hethe
Heycroft 家	—	—	—	William atte Heycroft	William atte Heycroft
Hurne-Alynote 家	—	—	—	Robert in Anglo	Robert in le Hurne
Oldman 家	Agnes Oldman	—	—	Robert Oldman	Robert Oldman
Waldrugge 家	Robert Waldrugge	Robert Waldrugge	—	Robert Waldrugge	William Waldrugge
Waleys 家	Roger Waleys	Roger Waleys	—	Roger Waleys	Roger Waleys
Weylond-Muleward 家	Henry Weylond	Henry Weylond	Henry Weylond	Henry Weylond	Henry Weylond
Wyte-Burdon 家	—	—	Richard le Wyte	Richard le Wyte	Richard le Wyte

성 명 한글 영어	E PRO E 179/161/10 mem.28	1305~6년 PRO E 179/161/10 mem.28	1316~17년 PRO E 179/161/8 mem.11	1327~28년 PRO E 179/161/9 mem.13	1329년 MM 5911
Aumoner 家	Matilda Gilberd	—	Thomas Aumoner	Thomas Aumoner	Thomas Aumoner
Benett 家	Robert the reeve	Alice widow of the pre-reeve	Alice wife of the pre-reeve	Alice	Alice
Bovecheriche 家	Richard Bovecheriche	—	Elia Bovecheriche	Elia Bovecheriche	Elia Bovecheriche
Brian-Carter 家	Adam Brian	Adam Brian	Adam Brian	Adam Brian	Adam Brian
Est 家	Richard Est	Richard Est	—	—	Richard Est
Hethe-Canon 家	Adam atte Hethe	Johanna atte Hethe	Thomas Canon	Thomas Canon	Thomas Canon
Heycroft 家	William Heycroft	William	Cristina atte Heycroft	Cristina atte Heycroft	Cristina atte Heycroft
Hurne-Alynote 家	Robert in le Hurne	Alina in le Hurne	—	—	Richard Alynote
Oldman 家	Robert Oldman	Robert Oldman	Robert Oldman	Robert Oldman	Robert Oldman
Waldrugge 家	William Waldrugge	William Waldrugge	William Waldrugge	William Waldrugge	William Waldrugge
Waleys 家	Roger Waleys	Maria Waleys	—	—	Maria Waleys
Weylond-Muleward 家	—	—	Richard Muleward	Richard Muleward	Richard Muleward
Wyte-Burdon 家	Robert le Wyte	Sahra le Wyte	William Burdon	William Burdon	Gilbert Burdon

姓 氏 名 字	1347년 MM 5874 mem. 2	1349년 MM 5874 mem. 6	1354년 MM 5916
Aumoner 家	Emma Aumoner	Emma Aumoner	Robert Magote: 1352(MM 5916)
Beneyt 家	Emma le Reevelove	Emma le Reevelove	John le Nappere: 1354(MM 5917 dorse)
Bovecheriche 家	Elia Bovecheriche	Elia Bovecheriche	John le Calve: 1354(MM 5917 dorse)
Brian-Carter 家	Hugo le Carter	Hugo le Carter	John Lacheford: 1352(MM 5916)
Est 家	Richard Est	Richard Est	Richard Marion: 1354(MM 5917 dorse)
Hethe-Canon 家	Johanna le Canon	—	John Alynote: 1353(MM 5916)
Heycroft 家	Robert atte Heycroft	Robert atte Heycroft	William Amy: 1353(MM 5916)
Hurne-Alynote 家	Richard Alynote	Richard Alynote	John Lacheford: 1354(MM 5917)
Oldman 家	Robert Oldman	Robert Oldman	John Benet: 1353(MM 5916)
Waldrugge 家	William Waldrugge	William Waldrugge	Grene 家
Waleys 家	Robert Waleys	Robert Waleys	Grene 家
Weyland-Muleward 家	Richard Muleward	Richard Muleward	John Dykere: 1353(MM 5917)
Wyte-Burdon 家	Gilbert Burdon	Gilbert Burdon	Walter Burdon: 1354(MM 5917 dorse)

다른 자유인의 토지를 모두 구입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¹⁵⁾ 이에 따라 Cuxham 장원은 직영지의 축소 없이도 관습보유지를 보유한 농가를 더 만들 수가 있었다.

Cuxham 농가에 대한 기록은 세금사정서¹⁶⁾, 토지보유인 명부¹⁷⁾, 장원법 정문서¹⁸⁾, 관습기록부¹⁹⁾, 장원회계문서²⁰⁾ 등에 나타나 있다. 이들 기록에 나타나는 관습보유농의 명단은 <표 1>과 같다.

2. 각 농가의 상속현황

1) Aumoner 家

Gilbert Aumoner는 1295년의 기록에 나타나는 10명의 관습보유인 가운데 1인으로 1304~5년까지 생존하였다. 1304~5년의 장원회계문서는 Gilbert Aumoner의 사망세(heriot)가 1마리 affer였음을 나타낸다.²¹⁾ Gilbert는 적어도 1299년에는 자신의 머슴을 거느렸던 농민이었다.²²⁾

Gilbert의 사후에 보유지는 그의 비방인 Matilda에게 넘어가 1315~16년 사망할 때까지 보유하였으며, Matilda의 사후에는 그녀의 아들이며 상속인인 Thomas에게 상속되었다. 상속지에 대하여 Thomas는 20 S.(실링)의 토지보유허가세(entry fine)를 지불하였다.²³⁾ Thomas는 1338년 사망하여 5S.의 가격이 나가는 1마리 affer를 사망세로 납부하였으며, 그의 보유지는 Thomas의 처 Emma가 장원의 관습에 의하여 그녀의 평생 동안 보유

15) 장원의 통합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P.D.A. Harvey, *A Medieval Oxfordshire Village*, pp. 113~115 참조.

16) 1295년(MM 2852), 1304년(MM 5905), 1305~06년(PRO E 179/161/10mem. 28), 1316~17년(PRO E 179/161/8 mem. 11), 1327~28년(PRO E 179/161/9 mem. 13). PRO=Public Record Office.

17) 1296년 경(MM 4122 dorse).

18) 1329년(MM 5911).

19) 1297~98년(MM 5899).

20) 1347년(MM 5874 mem. 2), 1349년(MM 5874 mem. 6).

21) P.D.A. Harvey ed. *Manorial Records of Cuxham*, Appendix VII.(이하 Appendix VII로 약함). affer=犁耕作業에 쓰이는 쟁기를 끄는 밀.

22) Gilbert의 famulus가 직영지의 추수시에 보리를 훔쳐 기록에 나타나고 있다 (MM 5907 mem.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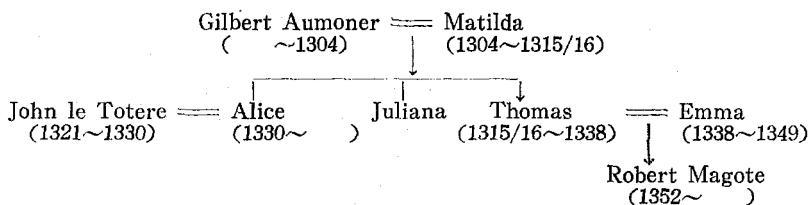
23) Appendix VII.

하게 되었다.²⁴⁾ Emma는 1349년 4월 17일에서 6월 23일 사이에 흑사병으로 희생되어 1마리의 vitula를 사방세로 바치고 있다.²⁵⁾ Emma의 후손이 없었는지 혹은 모두 사망하였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으며, 흑사병 이후 Aumoner 家의 보유지는 1352년 흑사병에서 살아남았던 4인의 빈농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Robert Magote가 보유하게 되어²⁶⁾ 보유농가가 바뀌게 되었다.

Robert Magote는 흑사병 이후 유일한 예속농민 출신의 장원관리인(reeve)으로서 1354년 9월에서 1356년 2월 이전까지 그 직에 종사하였는데²⁷⁾, 흑사병 얼마 전에 Cuxham 촌락에 정착했던 사람으로 생각된다.²⁸⁾

한편 Gilbert Aumoner의 딸인 Alice는 John le Totere와 결혼하여 1321년에 cottage를 보유하여 빈농이 되고 있다.²⁹⁾ John은 1330년에 사망하였으나 Alice는 흑사병 이후까지 생존하였다.³⁰⁾ Gilbert Aumoner의 작은 딸

〈도표 1〉 Aumoner 家의 상속관계



※ = 혼인관계

↓ 혈연상속

↓ 비혈연 상속

() 토지보유기간 또는 결혼한 연도

24) MM 5913.

25) MM 5875 mem. 1. vitula=어린 암소.

26) MM 5916.

27) P. D. A. Harvey, *A Medieval Oxfordshire Village*, p. 64의 Table V를 참조. Cuxham 장원에서 reeve는 장원 내의 부자유농이 장원관리인이 되었을 때 부르던 칭호이고, bailiff는 장원 내외의 자유인인 장원관리인이 되었을 때 부르던 칭호이다. P. D. A. Harvey, *Manorial Records of Cuxham*, pp. 12~13.

28) 1349년 2월의 기록에(MM 5874 mem. 6) 그의 이름이 최초로 나타나며, 그때 그의 cottage에 대한 보유하가세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1348년에 들어왔던 것으로 생각된다.

29) MM 5908 mem. 7.

30) 1352년 3월 영주에게 충성의 서약을 하고 있다(MM 5916).

Juliana 는 1328년 장원 밖으로 영주의 허가 없이 결혼하여 벌금을 물고 있다.³¹⁾

Aumoner 家의 토지 상속관계를 정리하여 표시하면 <도표 1>과 같다.

2) Beneyt 家

Robert Beneyt 는 1288년 9월부터 1311년 1월까지 Cuxham 장원판리인이었다.³²⁾ Robert 는 1297년까지 그의 母 Cecilia 가 보유하였던 $\frac{1}{2}$ 베게트의 토지를 상속받아 1311년 그가 사망할 때까지 보유하였다.³³⁾ 1313년의 장원 법정문서는 Robert 의 미망인 Alice 가 그녀의 남편 보유지에 30S. 의 토지보유허가세를 납부하고, 2명의 보증인을 세운 기록을 나타내고 있다.³⁴⁾ Alice 는 1311년부터 1343년까지 32년 동안 $\frac{1}{2}$ 베게트 토지의 보유인으로 자신의 토지 경작은 물론 직영지에 대한 부역의 의무를 수행하였다. Alice 의 보유지는 그녀의 사후인 1343년에 그녀의 미혼인 딸 Emma 가 상속하였다.³⁵⁾

그런데 Beneyt 家는 Alice 가 그녀의 남편 사후에 아들이 없이 딸 셋만으로 보유지를 경작하였으나 그럼에도 Cuxham 촌락에서 부유한 농가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1315년 Alice 가 마을 밖에서 2에이커의 토지를 구입하였음이 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때 토지를 구입한 Alice 와 또다른 2명의 판습보유농은³⁶⁾ 모두 영주의 허락을 받지 않고 토지거래를 하였으나 어떤 벌금도 물지 않고 구입한 토지를 보유하게 되었다.³⁷⁾

1343년 Alice 가 사망하자 7S. 가치의 1마리 암소가 사망세로 지불되었으며³⁸⁾, 토지는 미혼인 세째 딸 Emma 에게 돌아갔다. Emma 는 그 토지를 보유하기 위하여 33S. 4d. 의 토지보유허가세를 지불하였다.³⁹⁾ Emma

31) MM 5909 mem. 2. 12d. 의 벌금을 물었다.

32) P.D.A. Harvey, *A Medieval Oxfordshire Village*, Table V 참조.

33) 그녀의 상속세는 1마리 암소였다(Appendix VII).

34) MM 5908 mem. 3.

35) MM 5914 dorse.

36) Robert Oldman 과 William atte Heycroft 였다.

37) MM 5908 mem.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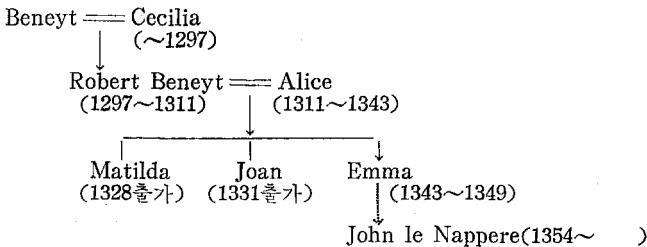
38) MM 5914 dorse.

는 1349년 4월 17일부터 6월 23일 사이에 흑사병으로 사망하여, 사망세로 1마리의 vitula를 지불하였다.⁴⁰⁾ Emma가 사망한 이후에 그녀의 보유지는 공한지로 영주에 귀속되었다가⁴¹⁾, 1354년 말에 John le Nappere의 보유지로 바뀌었다.⁴²⁾

Alice는 1328년에 딸 Matilda를, 그리고 1331년에 Joan을 장원 밖으로 출가시켜 각자 6d.의 결혼세를 납부하였다.⁴³⁾ 또 Alice는 재혼을 하지 않았던 까닭에 Alice Revelove(Reeve-love)라는 별칭을 얻게 되었으며, 그녀의 토지를 상속한 딸 Emma도 Emma Revelove로 알려지게 되었다.⁴⁴⁾

Beneyt 家의 토지 상속관계를 도표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도표 2〉 Beneyt 家의 토지 상속관계



3) Bovecheriche 家

Bovecheriche 家의 토지 보유는 1279년 장원법정문서에서 Richard Bovecheriche가 Eva la Blake과 결혼하기 위하여 11S.의 토지 보유허가세를 납부하면서 시작된다.⁴⁵⁾ 그런데 Richard의 처 Eva는 Richard와의 결혼이 적어도 세번째 결혼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1279년의 같은 장원법정문서는 John Nort가 Eva와 결혼하기 위하여 20S.의 토지 보유허가세를 지불하였

39) Ibid.

40) MM 5875 mem. 1.

41) 1352년 9개의 공한지 가운데 하나이다(MM 5916).

42) MM 5917 dorse.

43) 1328년 : MM 5909 mem. 2, 1331년 : MM 5909 mem. 4.

44) Revelove라는 이름은 Alice가 사망하기 얼마 전인 1343년의 장원법정문서에서 처음 나타난다(MM 5914).

45) MM 5906 mem. 1.

으나, 그 후 곧 사망하여 1마리의 암소를 사망세로 남부하였음을 나타내고 있다.⁴⁶⁾ 그렇지만 이보다 더 이전인 1278년~1282년 사이의 기록은 Eva가 William의 미망인으로 기록되어 있다.⁴⁷⁾ 따라서 Richard Bovecheriche는 적어도 Eva의 세번째 남편으로, 그녀와의 결혼으로 $\frac{1}{2}$ 버게트 토지를 보유하게 됨에 따라 판습보유농이 된 것을 알 수 있다.

Bovecheriche 家의 보유지는 Richard 가 사망한 이후⁴⁸⁾ 그의 아들 John이 1307~8년에 20S.의 토지 보유허가세로 상속받았다.⁴⁹⁾ John은 4년 후인 1311~12년에 사망하여 그의 토지는 아내인 Joan에게 넘어갔다. Joan은 1312~13년에 집에 불이 나서 남편의 사망세로 몇 8S. 가치가 나갔던 암소가 죽어 이를 면제받았으며, 집을 잘 지으라는 경례로 지대로 지불하는 4부셸의 밀 남부도 면제받았다.⁵⁰⁾ 그렇지만 Joan은 1313년에 그의 아들 Elia에게 $\frac{1}{2}$ 버게트의 토지를 양도하고 자신은 역시 남편이 보유하였던 cottage 와 6에이커의 토지로 은퇴하였다.⁵¹⁾ Elia는 토지 보유허가세로 33S. 4d. 를 지불하고 토지를 상속하였다.⁵²⁾ 이후 Elia는 1347~48년 자신이 사망할 때까지 토지를 보유하였으며, 그의 사망 후에는 그의 처 Julia가 토지를 보유하게 되었다.⁵³⁾ 그러나 Julia는 혹사병으로 희생되어 Bovecheriche 家의 보유지는 1352년에는 공한지로 영주에 귀속되었음을 나타낸다.⁵⁴⁾ 그 후 1354년 12월 15일의 장원법정 문서는 Robert Wykkyn이 이미 그 토지의 보유인이 되었다가 다시 John le Calwe가 보유하게 되었음을 보여주고

46) Ibid.

47) MM 5906 mem. 1 dorse.

48) 1309~10년에 그의 사망세로 1마리의 affter 가 남부되고 있다(Appendix VII).

49) Appendix VII.

50) MM 5837.

51) 이 $\frac{1}{4}$ 버게트에 대한 판습지대의 남부는 1309—10년의 장원회계 문서에 처음 나타난다(MM 5834).

52) MM 5908 mem. 3.

53) 1349년 2월에 쓰여진 지불금의 미납자 명단에 Bovecheriche 家의 보유인은 Julia Bovecheriche로 기록되어 있다(MM 5874 mem.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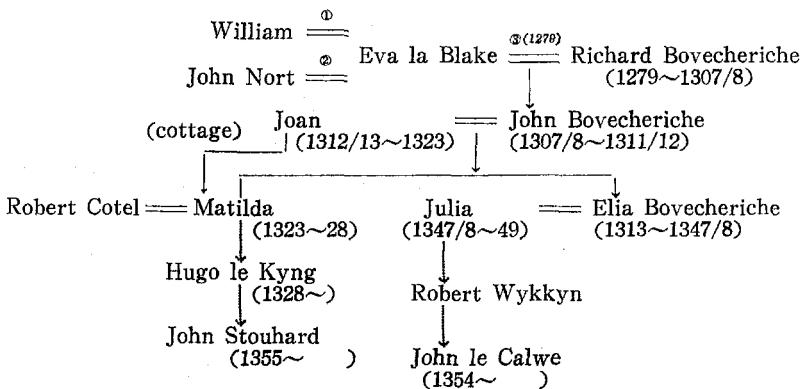
54) MM 5916.

있다.⁵⁵⁾

Cottage 와 6에이커의 토지로 은퇴하였던 Joan Bovecheriche 는 1323년에 사망하여 12d. 가치의 봉지를 사망세로 남부하였으며, 그 보유자는 Joan 의 딸 Matilda 가 6d.의 토지 보유허가세로 상속하였다.⁵⁶⁾ Matilda 는 1328년 Robert Cotel과 결혼하였고, 그녀가 보유하던 집과 토지는 Hugo le Kyng 에게 넘어갔다.⁵⁷⁾ Hugo 가 언제 사망하였는지 또 그 보유자가 언제 영주에 귀속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흑사병 이후에 그 보유자는 $\frac{1}{2}$ 에 이어 씩 나뉘어 단기간으로 임대되었다가⁵⁸⁾ 1355년에는 John Stouhard 에게 넘어가고 있다.⁵⁹⁾

Bovecheriche 家의 토지 상속 관계는 <도표 3>과 같이 정리된다.

<도표 3> Bovecheriche 家의 토지상속관계



4) Brian-Carter 家

1290~91년에 Cuxham 장원에서는 3인의 빈농이 관습지를 보유하게 되었

55) MM 5917 dorse.

56) MM 5908 mem. 9.

57) MM 5909 mem. 2 dorse.

58) 1355년 5월의 장원법정문서는 Richard Marion, Robert Magote, John Alynote 가 각기 Matilda Bovecheriche 가 보유했던 토지를 $\frac{1}{2}$ 에 이어 씩 임대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MM 5918).

59) MM 59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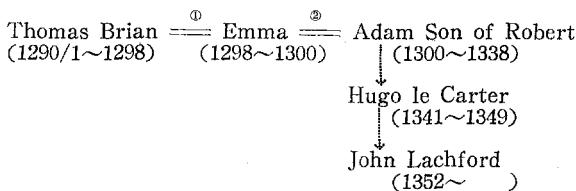
다.⁶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Thomas Brian 으로 2S. 8d.의 토지 보유허가세를 납부하였다. Thomas 는 그후 1298년에 사망하였는데, 장원법정 문서에 의하면 Thomas 의 사망세는 5S. 가치의 1마리 암소였다.⁶¹⁾

Thomas Brian 의 토지는 그의 사후에 미망인 Emma 가 재혼함에 따라 보유인이 바뀌게 되었다. 즉 Robert 의 아들 Adam 은 1300년에 Emma 와 결혼하고 그녀의 토지를 보유하기 위하여 2S. 8d. 를 납부하였다.⁶²⁾ 1327년에 Adam 은 자신의 cottage 에 부과되어 있는 건초쌓기 부역을 거부하여 1S. 의 벌금을 물고 있다.⁶³⁾ 그런데 Adam 은 그의 혈연 상속인을 남기지 못했던 듯하다. 1338년에 그의 보유지 $\frac{1}{2}$ 버케트를 영주에게 반납했기 때문이다. 대신 Adam 은 자신의 cottage 에 은퇴하였는데, 영주는 이에 대한 댓가로 Adam 이 2에이커의 토지를 자유자로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은혜를 베풀고 있다.⁶⁴⁾

Adam 이 반납한 관습보유지는 영주에 귀속되었다가 1341년에 빙농이었던 Hugo le Carter 에게 양도되었다.⁶⁵⁾ Hugo 는 1349년 4월 19일~6월 23일 사이에 사망하여 1마리의 boviculus 를 사망세로 납부하였다.⁶⁶⁾ 이후 이 보유지는 1352년 John Lachford 가 토지 보유허가료 없이 보유하게 되었다.⁶⁷⁾

Brian-Carter 家의 토지 상속 관계는 <도표 4>와 같다.

<도표 4> Brian-Carter 家의 토지상속관계



60) MM 5809.

61) MM 5907 mem. 4.

62) 이를 위하여 Adam 은 4인의 보증인을 세우고 있다(MM 5907 mem. 5 dorse).

63) MM 5909 mem. 2.

64) MM 5913.

65) Hugo 는 1329년에 Cuxham 장원의 cottager 가 된 사람이 다(MM 5911).

66) MM 5875 mem. 1. boviculus=성장한 송아지.

67) MM 59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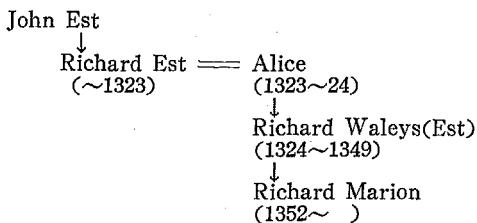
5) Est 家

Est 家의 John Est 는 1278~82년 사이에 기록되어 있는 8명의 판습보유농 가운데 1인으로⁶⁸⁾, John 은 1277년 9월부터 1279년 3월까지 Cuxham 장원의 장원판리인이었다.⁶⁹⁾ John 이 언제 사망하였는지는 불확실하나 1295년의 기록은 John Est 의 아들 Richard Est 가 토지보유인으로 나타난다.⁷⁰⁾ Richard 는 1323년에 사망하여 10S.의 가치가 나가는 1마리 암소를 사망세로 바쳤으며, 그의 처 Alice 는 남편의 보유지를 잘 유지하겠다는 서약을 하였다.⁷¹⁾

그런데 Alice 는 혈연상속인을 남기지 못하고 다음해인 1324년에 사망한 것 같다. 이해에 Richard Waleys 가 30S.의 토지보유허가세로 세로운 토지보유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⁷²⁾ Richard Waleys 는 $\frac{1}{2}$ 에이커 토지보유인이 된 후 Richard Est 로 불렸으며⁷³⁾, 혹사병에 희생되어 그의 보유지가 영주에 귀속되었다.⁷⁴⁾ 그 보유지는 1354년에 Richard Marion 에게 넘어가 보유자가 바뀌게 되었다.⁷⁵⁾

Est 家의 토지상속은 <도표 5>와 같다.

<도표 5> Est 家의 토지상속 관계



68) MM 5906 mem. 1 dorse 에 기록된 8인의 판습보유농 가운데 1인이다.

69) P.D.A. Harvey, *A Medieval Oxfordshire Village*, Table V.

70) MM 2852.

71) MM 5908 mem. 9.

72) MM 5,908 mem. 9 dorse.

73) 이후에 나타나는 문서는 그의 이름을 Richard Est 로 표기하고 있다.

74) 1352년 3월부터 1354년 4월까지의 장원법정 문서는 Est 家의 보유지가 영주에 귀속되었음을 보여준다(표 4 참조).

75) MM 5917 dorse.

6) Hethe-Canon 家

Hethe 家의 Adam Hethe 는 1292~93년에 관습지를 부여 받은 듯 하다.⁷⁶⁾ Adam 은 관습보유농이 되기 이전에는 빙농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1282년에는 Cuxham 의 cutmill 을 입대했던 것으로 나타난다.⁷⁷⁾ Adam Hethe 는 1316~17년에 사망하여 사망세로 2S. 가치가 나가는 놋쇠 그릇을 납부하였다.⁷⁸⁾ Adam 의 사후에 그의 보유지는 아내인 Johanna 에게 넘어갔다.⁷⁹⁾ Johanna 는 1316~17년에 Thomas Canon 과 재혼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때 Thomas Canon 은 40S. 의 토지 보유허가세를 납부하였다.⁸⁰⁾ 30년 후 Thomas Canon 은 사망하였으며, 사망세로 4S. 가치의 1마리 affer 를 납부하고 있다.⁸¹⁾ Thomas 가 사망한 후 그의 보유지는 미망인 Johanna 에게 넘어갔다.⁸²⁾ 그런데 이 보유자는 1347~48년에 공한지로 영주에 귀속되었음을 보여⁸³⁾, 그때 Johanna 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Thomas Canon 에게는 John 과 Richard 두 아들이 있었으나⁸⁴⁾ 이들이 토지를 상속했다는 기록은 존재하지 않는다. Canon 家의 보유자는 1353년에 John Alynote 에게 넘어갔다.⁸⁵⁾

Adam atte Hethe 에게는 딸 Cristina 가 있었는데 Cristina 는 1296년 William atte Heycroft 와 결혼하여 Heycroft 家의 가족이 되었다.⁸⁶⁾ Adam atte Hethe 의 아들로 생각되는 John atte Hethe 는 cutmill 을 입대 받아 경영하였는데, 1335년에는 John Molindinarius de le Hethemulle 라 불렸으

76) 주 14) 참조.

77) MM 5906 mem. 2.

78) Appendix VII.

79) Johanna 는 1316~17년에 토지보유인으로 나타난다(표 1 참조).

80) Appendix VII.

81) MM 5915.

82) 1347년 7월의 기록은 토지보유인이 Johanna 였음을 보여준다(표 1 참조).

83) 표 1 참조.

84) 이들에 관한 기록은 1336년 장원법정 문서에 나타난다(MM 5908 mem. 10 dor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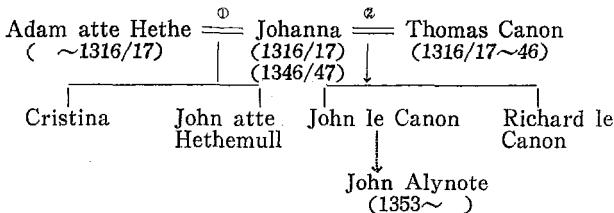
85) MM 5916 dorse.

86) MM 5907 mem. 3.

며⁸⁷⁾, 1343년에는 John atte Hethemull로 호칭되었다.⁸⁸⁾ John이 그의 父 Adam atte Hethe의 토지를 상속받지 못한 이유는 알 수 없으나, John은 혼사병 이후 $\frac{1}{2}$ 버게트가 공한지로 남아있었던 때에도 이를 보유하지 않고 평생 miller로 그의 직을 삼고 있다.⁸⁹⁾

Hethe-Canon 家의 토지상속관계는 <도표 6>과 같이 정리된다.

<도표 6> Hethe-Canon 家의 토지상속관계



7) Heycroft 家

William atte Heycroft는 1296년 Adam atte Hethe의 딸 Cristina와 결혼하였으며⁹⁰⁾, 1297~98년의 기록문서에 $\frac{1}{2}$ 버게트를 소유한 편습보유농으로 나타난다.⁹¹⁾

그런데 Cuxham의 기록은 William이 춘락에서 부유한 농민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 있게 해준다. 1301~02년에는 영주로부터 면적 미상의 목장지를 2S.의 토지보유허가세로 회득하였으며⁹²⁾, 1315년에는 이웃 마을에서 1에이커의 자유지를 회득하였기 때문이다.⁹³⁾ William Heycroft 가 부유한 농민이었던 것은 그가 1318~19년에 이웃 장원인 Holywell의 장원관리인으로 지명된 사실⁹⁴⁾에서도 알 수 있다.

87) MM 5908 mem. 10.

88) MM 5914.

89) 혼사병 이후인 1353년 5월의 장원법정문서는 John이 여전히 miller였음을 보여준다(MM 5917).

90) 토지보유허가세는 26s. 8d.였다(MM 5907 mem. 3).

91) 표 1 참조.

92) Holdepound라 불리는 pasture였다(Appendix V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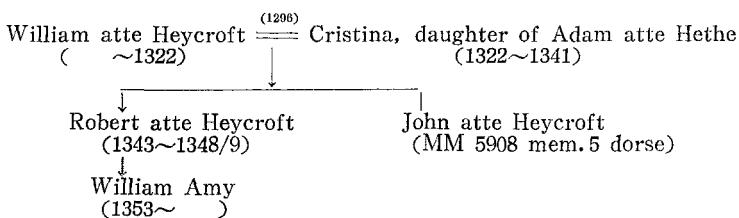
93) MM 5908 mem. 4.

94) 그의 직책에 대해서 편습지대가 면제되었던 기록은 같은 해 장원회계 문서인

William 은 1322년에 사망하여 10S. 가치가 나가는 1마리 말을 사망세로 남부하였으며, 그의 보유지는 미방인인 Cristina atte Heycroft 가 보유하게 되었다.⁹⁵⁾ Cristina 는 1341년까지 토지를 보유하였다가 사망하여 5S. 이나가는 말을 사망세로 남부하였다.⁹⁶⁾ Cristnia 의 사망 후에 그녀의 보유지는 상속인이었던 Robert atte Heycroft 가 상속하게 되었다. 1343년 Robert 는 30S. 의 토지보유허가세를 납부하였다.⁹⁷⁾ 이후 Robert 는 1348년 7월 25일 ~ 1349년 4월 18일 사이에 죽사병에 희생되었다.⁹⁸⁾ 죽사병이 지나간 후 그 토지는 William Amy 가 보유하게 되었다.⁹⁹⁾

Heycroft 家의 토지상속관계는 <도표 7>과 같이 나타난다.

<도표 7> Heycraft 家의 토지상속관계



8) Hurne-Alynote 家

1296년의 장원법정문서는 Robert Bercarius 가 Alina in the Hurne 를 차로 막아하고 판습보유농이 되어 26s. 8d. 의 토지보유허가세를 납부하였음을 나타낸다.¹⁰⁰⁾ 그런데 그후의 기록은 Robert Bercarius 가 Robert in le

MM 5842부터 나타난다. 장원에서 장원판리인이 될 수 있었던 사람은 부유농Dean 이었다. 이같은 사실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들을 참조할 것. G.C. Homans, "The Rural Sociology of Medieval England," pp. 38~9; Zvi Razi, "Family, Land and the Village Community in Later Medieval England," pp. 14~15; Janet Williamson, "Norfolk: Thirteenth Century," P.D.A. Harvey ed., *The Peasant Land Market in Medieval England*, p. 52.

95) MM 5908 mem. 6.

96) MM 5913.

97) MM 5914.

98) 사망세는 1마리 affer 였다(MM 5875 mem. 2).

99) 1953년 1월의 장원법정문서에 기록되어 있다(MM 59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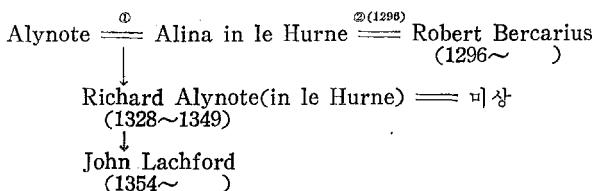
100) MM 5907 mem. 3.

Hurne로 나타나고 있어¹⁰¹⁾ Robert는 토지를 그의 처 Alina의 권리로 보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¹⁰²⁾ 그후 이 보유자는 1328년에 Alina의 아들 Richard in le Hurne가 상속하였다.¹⁰³⁾ 그런데 1329년 Richard가 영주에게 충성을 서약할 때에는 그의 이름이 Richard Alynote로 나타난다.¹⁰⁴⁾ Richard의 性이 Hurne에서 Alynote로 바뀐 것은 Richard가 그의 母 Alina의 性을 따르다가 토지를 보유한 이후부터는 父의 性을 따랐기 때문으로 보인다.

Richard Alynote는 1349년 4월 17일과 6월 23일 사이에 흑사병으로 사망하였으며, 성명 미상인 그의 처도 역시 같은 기간에 사망하였다.¹⁰⁵⁾ 그들의 후손에 대한 언급은 없으며, 1352년의 기록은 Alynote 家의 보유자가 영주에게 귀속되어 있음을 보인다.¹⁰⁶⁾ 그후 이 보유자는 1354년에 John Lachford가 보유하게 되어¹⁰⁷⁾ 보유농가가 바뀌게 되었다.

Hurne-Alynote 家의 토지 상속관계는 <도표 8>과 같다.

<도표 8> Hurne-Alynote 家의 토지상속관계



9) Oldman 家

Robert Oldman의 미망인 Agnes가 1296년 Robert Waldrugge와 재혼함에 따라 그녀의 두번째 남편인 Robert Waldrugge가 전남편 Robert Oldman

101) 예를 들면 1304년 세금사정서 목록(MM 5905)과 1305~06년의 세금사정서 목록(PRO E 179/161/10 mem. 28) 등이다.

102) 본 논문 p. 54 참조.

103) MM 5908 mem. 2, 이때 토지보유허가세는 면제되었다.

104) MM 5911.

105) Richard Alynote의 사망세는 1마리 암소였고, Richard 아버지의 사망세는 1마리 boviculus였다(MM 5875 mem. 1).

106) MM 5916.

107) MM 5917.

의 토지를 보유하게 되었다.¹⁰⁸⁾ Robert Waldrugge는 Oldman 家의 토지를 보유했던 관계로 결혼 후에 Robert Oldman으로 불리게 되었다.¹⁰⁹⁾ 또 1295년까지 세분소를 경영했던 관계로 Robert Mullward로도 불렸다.

그런데 Agnes의 전남편인 Robert Oldman은 1289~90년까지의 기록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¹¹⁰⁾ 적어도 그때까지는 생존했던 것으로 보인다. Robert의 아들 Hugo에 대한 기록은 1297년 이외에는 나타나지 않으나¹¹¹⁾, Robert의 또 다른 아들로 추정되는 Richard는 1318~19년에 Weylond 家의 토지를 보유한 후 판습보유농이 되어¹¹²⁾ 장원의 기록에 자주 나타난다.

Agnes의 두번째 남편인 Robert는 1311년 1월부터 1349년 3월 그가 사망할 때까지 장기간 동안 Cuxham 장원의 장원관리인 치에 종사하였다.¹¹³⁾ 이 기간 동안에 Robert는 Cuxham 촌락에서 가장 부유한 농가로 번성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Oldman 家는 1315년에 자유지 3에이커를 영주의 허가없이 다른 마을에서 구입하였으며¹¹⁴⁾, 1323년에는 Cuxham 촌락 내의 판습지 6에이커를 더 구입하여¹¹⁵⁾ 매우 번성해 가는 농가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Oldman 家가 가장 부유하고 번성하였다는 증거는 다른 면에서도 나타난다. Cuxham 마을에서 수레를 끄는 말(carthorse)은 오직 Oldman 家만이 보유하였으며¹¹⁶⁾, 또 Robert Oldman은 자신의 머슴을 거느리고 있었다.¹¹⁷⁾ Robert Oldman 자신이 장원관리인이었다는 사실도 Oldman 家가

108) 토지보유허가세는 26s. 8d.였다(MM 5907 mem.3).

109) 토지보유인이 된 후 모든 기록은 Robert Oldman으로 그의 이름을 표기하고 있다.

110) MM 5805.

111) MM 5907 mem.4.

112) 본 논문 p.47 Weylond-Muleward 家 참조.

113) P.D.A. Harvey, *A Medieval Oxfordshire Village*, Table V 참조.

114) MM 5908 mem.4.

115) MM 5908 mem.9, Joan Bevecheriche에서 그의 딸 Matilda Bevecheriche로 넘어갔던 6에이커의 토지가 5s.의 토지보유허가세로 Robert Oldman에게 다시 넘어왔다.

116) 1349년 Robert Oldman과 그의 치의 사망세가 carthorse였다(표 2 참조).

117) 1346~47년의 기록은 장원관리인인 Robert Oldmen이 그의 머슴(hominum suorum) 2명과 함께 왕비의 물품을 위한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는 소문의 진상을 확인하기 위하여 15마일이나 떨어진 Reading 마을을 다녀왔음을 나타낸다(MM 5872).

부유하였음을 나타낸다.¹¹⁸⁾ Robert Oldman의 딸 Matilda가 1324년 자유인 이었던 John atte Grene과 결혼할 수 있었던 것은¹¹⁹⁾ 이와 같은 Oldman 家의 지위 때문이 아니었던가 생각된다.

흑사병이 창궐했던 1349년 3월 20일 경 Robert Oldman이 그 집에서 첫 번째 회생자가 되었다.¹²⁰⁾ 그 뒤를 따라 그의 처 Agnes가 회생되었다.¹²¹⁾ 1349년 3월 20일 John Oldman은 부친의 뒤를 이어 장원의 관리인이 되었다.¹²²⁾ 그러나 John이 장원관리직에 종사한 것은 1349년 3월 20일부터 약 3주 동안인 4월 13일까지 짧은 기간에 불과하였는데¹²³⁾, John 역시 흑사병에 회생되어 그랬던 것 같다. 그후 Oldman 家에 대한 언급은 기록에서 사라져 나타나지 않는다.

그 후 Oldman 家의 보유지는 1353년 John Benet이 그 자신과 그의 처 Julia 그리고 그의 아들 Giles의 평생으로 보유하게 되었다.¹²⁴⁾ 그러나 다음 해인 1354년에 Thomas le Marshall이 10s.의 토지보유허가서로 다시 보유하게 된 것으로 보아¹²⁵⁾, John Benet은 마을을 떠난 것으로 생각된다.

Oldman 家의 토지상속관계는 <도표 9>와 같이 정리된다.

118) 장원의 관리직은 농민이 보유한 토지규모에 따라서 결정되었다. Homans에 의하면 reeve는 yardlander, hayward는 $\frac{1}{2}$ yardlander에서 선출되지만 ploughman은 cotter 중에서 선출되었다. G. C. Homans, "The Rural Sociology of Medieval England," p. 39. Worcestershire에 위치한 Halesowen 마을의 경우 reeve, forester, woodward, ale taster 등을 선출하였는데 때로는 부적격자를 뽑아 마을 전체가 면금을 물기도 하였다. Zvi Razi, "Family, Land and the Village Community in Later Medieval England", p. 14.

119) Matilda는 John의 두번째 아내가 되었다(MM 5908 mem. 9).

120) MM 5875 mem. 2.

121) 1348년 7월 25일 ~ 1349년 4월 18일 사이의 기록은 Robert와 그의 처 Agnes가 사망하여 사당세로 각각 1마리씩의 carthorse를 납부하였음을 보여준다(MM 5875 mem.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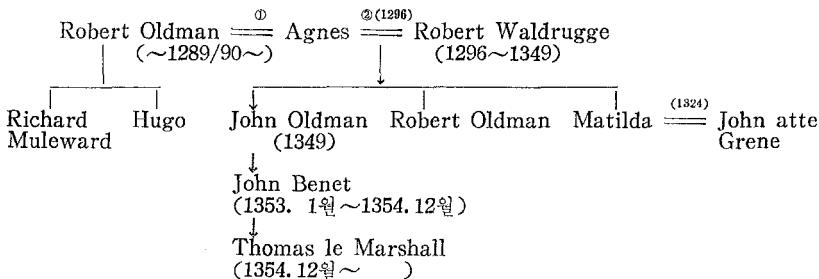
122) John의 신분이 농노였음에도 불구하고 reeve가 아니라 bailiff로 표기되었던 것은 그 이유가 분명하지는 않으나 흑사병의 타격으로 사회가 어수선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123) 1349년 4월 18일에 끝나는 장원회계 문서(MM 5875 mem. 2) 뒷장에는 bailiff인 Robert Oldman의 아들 John에게 3월 20일부터 4월 13일까지 3주 2일 동안의 직책 수행에 대한 급여로 3부셸의 밀을 지급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124) MM 5916.

125) MM 5917 dorse.

〈도표 9〉 Oldman 家의 토지상속관계



10) Waldrugge 家

Waldrugge 家의 보유지는 Robert Waldrugge 가 1290~91년에 26s. 8d. 의 토지 보유허가세로 $\frac{1}{2}$ 버게트를 회복하면서 시작된다.¹²⁶⁾ 그럼에 1279년의 장원법정 문서에 나타나는 William Waldrugge 는 Robert Waldrugge 의 아버지로 빙동이었던 것 같다.¹²⁷⁾ Robert Waldrugge 는 1300~01년에 사망하였다. 그의 사후 보유지는 처 Alice에게 넘어갔으며, Alice는 인수한 토지를 잘 유지하겠다는 서약을 하고 있다.¹²⁸⁾ 그러나 1302~03년에는 그의 아들인 William Waldrugge 가 50s. 의 토지 보유허가세로 그 토지를 상속하였다.¹²⁹⁾

William Waldrugge 는 1317~18년에 이웃 Cheddington 마을의 장원관리인이 되었으며¹³⁰⁾, 1327년에는 그가 보유한 cottage에 대한 부역을 거부하여 벌금을 물었다.¹³¹⁾ 그후 William의 보유지는 1348~49년에 공한지로 영주에 귀속되었다.¹³²⁾ William Waldrugge에게는 아들이 있었으나, 1326년 이외에는 기록에 나타나지 않는다.¹³³⁾ William의 딸 Johanna에 대한 기록은 1352년과 1353년에 나타나는데, 당시에 그녀는 소규모의 토지를 임

126) MM 5809.

127) MM 5906 mem. 1.

128) Robert의 사망세는 1마리 암소였다(MM 5097 mem. 6).

129) Appendiv VII.

130) 그의 관습지에 대한 면제는 같은 해의 기록(MM 5841)에서부터 시작된다.

131) MM 5909 mem.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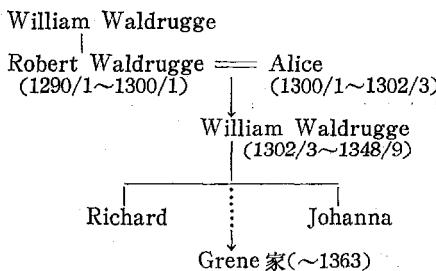
132) 1349년의 기록은 장원관리인이 그 보유지에 파종을 했던 것으로 나타난다 (MM 5875 mem. 1).

133) MM 5908 mem. 5 dorse.

대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¹³⁴⁾ 1296년 Robert Oldman의 미방인 Agnes와 결혼을 한 Robert Waldrugge는 William Waldrugge와 거의 동연배로 보이나 William Waldrugge와의 관계는 분명치 않다. William의 사망 후에 Waldrugge 家의 보유지는 자유인이었던 Grene 家에 임대된 것으로 나타난다.¹³⁵⁾

Waldrugge 家의 토지 상속관계는 〈도표 10〉과 같이 표시된다.

〈도표 10〉 Waldrugge 家의 토지상속관계



11) Waleys 家

Waleys 家의 보유지는 1291~92년에 Roger le Waleys가 20s.의 토지보유허가세로 $\frac{1}{2}$ 버케트의 토지를 갖게 되면서 시작된다.¹³⁶⁾ Roger Waleys가 관습보유자를 갖게 될 당시에 Roger는 적영지의 머슴으로 쟁기질을 담당하였다.¹³⁷⁾ 관습지를 보유한 후에도 Roger는 관습농들 가운데에서는 가난했던 것으로 보인다. 1304년 관습농들의 동산액 평가에서 Roger가 가장 낮게 평가되었던 것은 그같은 사실을 나타내는 한 예로 생각된다.¹³⁸⁾ 이

134) 1352년 (MM 5916), 1353년 (MM 5916).

135) 1352년 3월 Cuxham 장원에서는 공한지로 영주에 귀속되어 있는 보유지를 제외하고 토지보유인들이 영주에게 충성의 서약을 해하였다. 그런데 그때 Waldrugge 家와 Waleys 家의 보유지만이 영주에 귀속되지도 않았고 보유인이 충성의 서약을 하지도 않고 있다(MM 5916). 이것으로 1352년 3월 이전에 두 보유지가 이미 Grene 家에 임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1363년의 기록은 임대했던 두 보유지가 다시 영주에 귀속되고 있음을 보인다. P.D.A. Harvey, *A Medieval Oxfordshire Village*, p. 136. no. 8.

136) MM 5810.

137) 1291~92년의 기록은 ploughman에 대한 금료가 기록되어 있다(MM 5810).

138) Roger의 동산 평가액은 8s. 10d.였다. 반면 가장 많았던 Richard Est는 34s. 이었다(MM 59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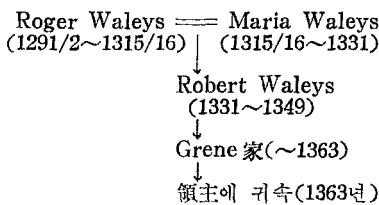
후 1315~16년에는 Roger의 사망세가 1s. 0d.의 현금으로 정수되고 있는 예¹³⁹⁾, 아마도 Roger의 사망시에 사망세로 납부할 가족이 없어서 현금이 정수된 것 같다.

Roger Waleys의 사후에 그의 토지는 미망인 Maria에게 넘어가 1331년 그녀가 사망할 때까지 보유하였다.¹⁴⁰⁾ Maria의 사망 후에 보유자는 그녀의 아들 Robert가 30s.의 토지보유허가세에 상속하게 되었다.¹⁴¹⁾ Robert는 이 토지를 자신이 혹사병에 희생될 때까지 보유한 것 같으며, 그 후에는 Waldrugge 家의 보유자와 함께 Grene 家에 임대되었다.¹⁴²⁾

1324년 Est 家의 토지를 보유하게 된 Richard Waleys는 Robert Waleys와 거의 같은 연배이나 Robert와의 관계는 확실하지 않다.

Waleys 家의 토지상속관계는 <도표 11>과 같다.

<도표 11> Waley 家의 토지상속관계



12) Weylond-Muleward *

Henry Weylond는 1290~91년에 세로이 생겨난 $\frac{1}{2}$ 버게트의 보유인으로¹⁴³⁾, Henry de Cuxham으로도 불렸던 것으로 보아¹⁴⁴⁾ 고황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으로 생각된다. Henry의 보유자는 1313년에 20s.의 토지보유허가세로 그의 아들인 Robert Weylond가 상속하였다.¹⁴⁵⁾ 그런데

139) Appendix VII.

140) Maria에 대한 사망세는 5s.이 나가는 1마리 affer였다(MM 5909 mem. 4).

141) MM 5909 mem. 4.

142) 주 135) 참조.

143) 토지보유허가세는 26s. 8d.였다(MM 5809).

144) 1290~91년의 장원회계문서(MM 5809)와 1296년의 보유인명부(MM 4122)에 그렇게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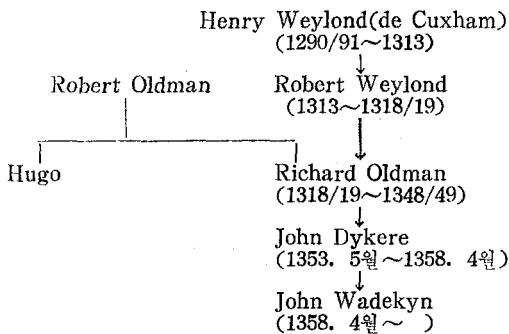
145) MM 5908 mem. 3.

Robert의 보유지가 그 후 5~6년 뒤인 1318~19년에 Richard Oldman에게 넘어가는 것으로 보아¹⁴⁶⁾ Robert Weylond는 혈연상속인을 남기지 못하고 사망한 것 같다.

Richard Oldman은 Robert Oldman의 아들로서 1295년부터 miller였던 것으로 보인다.¹⁴⁷⁾ Richard는 1327년 cottage에 부과된 부역을 거부하여 벌금을 물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으로¹⁴⁸⁾, 1348년 7월에서 1349년 4월 사이에 혹사병으로 희생되었다.¹⁴⁹⁾ 이 토지는 1352년에 9개의 공한지 가운데 하나였다가¹⁵⁰⁾, 1353년 5월 John Dykere에게 넘어갔다.¹⁵¹⁾ 그러나 Dykere는 Cuxham에 영구히 정착하지 아니하였고 1358년에는 그 토지가 다시 John Wadekyn에게 넘어갔다.¹⁵²⁾

Weylond-Muleward 家의 토지 상속관계는 <도표 12>와 같다.

<도표 12> Weylond-Muleward 家의 토지상속관계



13) Wyte-Burdon 家

Wyte 家는 1278~82년 사이의 군역대납자명부(scutage list) 속에서 처음

146) 토지 보유허가세는 40s. 이었다(MM 5842).

147) 본 논문 p. 42 Oldman 家 참조.

148) MM 5909 mem. 2.

149) 사당세는 1마리 affer였다(MM 5875 mem. 2).

150) MM 5916.

151) MM 59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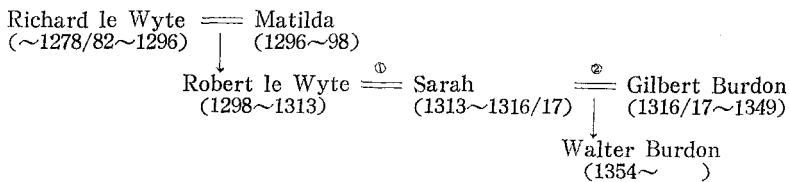
152) MM 5920 dorse.

나타나는데 Richard le Wyte 가 보유인 이었다.¹⁵³⁾ 그런데 1296년의 장월법 정문서는 Richard le Wyte 가 사망하여 3s. 가치의 1마리 heifer를 사망세로 납부하였으며¹⁵⁴⁾, 1298년에는 그의 처 Matilda 역시 사망하여 5s. 6d. 가치가 나가는 1마리 affer를 역시 사망세로 납부하였음을 나타내고 있다.¹⁵⁵⁾ Matilda 가 사망한 이후에 Wyte 家의 보유자는 Robert le Wyte 가 24s. 의 토지보유하가세로 상속하였다.¹⁵⁶⁾

그런데 Robert 의 보유자가 1313년에 Sarah Wythe 에게 넘어간 것으로 보아¹⁵⁷⁾, Robert Wyte 는 그때 사망하였음이 틀림없다. Sarah 는 1316~17년에 Gilbert Burdon 과 재혼하였으며, Gilbert 는 Sarah 의 토지를 보유하기 위하여 30s. 의 토지보유하가세를 납부하였다.¹⁵⁸⁾ Gilbert Burdon 은 Sarah Wythe 와 결혼 후에 Gilbert Wyte 라고도 불렸다.¹⁵⁹⁾ Gilbert Burdon 이 사망한 후¹⁶⁰⁾, 그의 보유자는 Gilbert 의 아들로 생각되는 Walter Burdon 에게 상속되었다.¹⁶¹⁾

Wyte-Burdon 家의 토지 상속관계는 〈도표 13〉과 같다.

〈도표 13〉 Wyte-Burdon 家의 토지상속관계



153) MM 5906 mem. 1 dorse.

154) MM 5907 mem. 3. heifer(juuenga)=이린 암소.

155) MM 5907 mem. 4.

156) 4인의 보증인도 세우고 있다(MM 5907 mem. 4).

157) MM 5908 mem. 3.

158) Appendix III.

159) 1322년의 기록은 Gibert le Wyte 와 그의 처 Sarah 로 나타나나(MM 5908 mem. 6), 1336년의 기록은 Gilbert Burdon 과 그의 처 Sarah 로 나타난다(MM 5908 mem. 10).

160) Gilbert Burdon 은 혹사병이 퍼지기 시작하면서 1349년 2월까지는 생존하였으나(표 1 참조), 같은 해에 사망하여 1마리 affer 를 사망세로 납부하였다.

161) 1354년 12월이다(MM 5917 dorse).

3. 상속관습의 특징

이상과 같이 나타나는 Cuxham 촌락 관습보유농들의 상속형태로부터 다음과 같은 점들을 알 수 있다.

1) 농민一家의 보유지는 혈연에 따라 상속됨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즉 父의 토지는 그의 子에게로, 그리고 또 다음 세대에 그의 子에게로, 혈연에서 혈연으로 세대를 따라 상속되어 혈통이 단절되지 않는 한 他家로 양도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같은 상속 원칙은 호만스의 연구 아래 중세 영국농민의 상속관습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¹⁶²⁾ 그러나 家보유지에 대한 생득권으로 모든 아들이나 딸들이 가졌던 child portion이나 marriage portion에 대한 언급은 없다.¹⁶³⁾ 또 혹사병 이전 시대에도 토지거래를 통하여 부농층이 형성될 수 있었던 사실은 몇몇 농가의 예가 보여주고 있지만, 그 후 그들의 토지가 자녀들에게 어떻게 재분배되었는가는 알 수가 없다.¹⁶⁴⁾

토지보유인이 사망하면 사망세가 부과되었고, 새로운 상속인에게는 토지보유허가세가 부과되었다. 사망세는 주은 토지보유인이 가졌던 ‘가장

162) G.C. Homans, *English Villagers of the Thirteenth Century*, pp. 110, 124~25, 137~38, 142~43, 195~97, 200~1, 214~15; J.A. Raftis, *Tenure and Mobility*, pp. 43, 48, 60~63, 206; R.H. Hilton, *Bond Men made Free*, pp. 38~9.

163) child portion이나 marriage portion에 관한 사항은 다음 글들을 참조할 것. F. Pollock and F.W. Maitland, *The History of English Law before the time of Edward I*, ii(2nd edn., Cambridge, 1898), pp. 15~17; Cicely, Howell, “Peasant Inheritance Customs in the Midlands, 1280~1700,” pp. 113~114, 118~19, 125, 154~55. 상속자들 사이의 동등한 재산분배에 대한 문제는 Bracton도 언급하고 있다. Bracton, *De Legibus et Consuetudinibus Anglie*, 4 vols, ed. S.E. Thorne(Harvard U.P., 1968~75), fos 75b~76a, pp. 220~1.

164) 혹사병 이전 시대에 형성된 부농들의 토지는 자녀들에게 재분배되어 혹사병 이후 시대의 농민층의 분화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 글들을 참조할 것. Janet Williamson, “Norfolk: Thirteenth Century,” pp. 93~4, 100~3; Zvi Razi, “Family, Land and the Village Community in Later Medieval England,” p. 9; 참고, “13~14세기 英國農民의 土地去來”, 西洋史研究 第7輯(1985), pp. 191~3.

훌륭한 가축'으로 규정되어 있었다.¹⁶⁵⁾ 따라서 그가 오직 1마리의 가축밖에 없어도 영주는 이를 정수하였다.¹⁶⁶⁾ 1316~17년에 나타나는 사망세로서 놋그릇의 정수 기록은¹⁶⁷⁾ 사방한 토지보유인이 가축을 남기지 않았던 경우로 생각된다. 토지보유허가세는 새로운 토지보유인이 혈연상속인 이든

〈표 2〉 사망세 및 토지보유허가세 목록

구 분 보유인	사 망 세	토 지 보 유 허 가 세
Aumoner 家	affer(1304~05), cow(1315~16), affer(1338 : 5s.), vitula(1349)	20s. (1315~16), 면제(1352)
Beneyt 家	cow(1311), cow(1343 : 7s.), vitula(1349).	30s. (1313), 33s. 4d. (1343), 면제(1354)
Bovecheriche 家	cow(1279), affer(1309~10), cow(1312~13 : 8s.~면제), affer(1347~48).	11s. (1279), 20s. (1279), 20s. (1307~8), 33s. 4d. (1313), 면제(1354)
Brian-Carter 家	cow(1298 : 5s.), bovinulus(1349).	26s. 8d. (1290~91), 26s. 8d. (1300), 20s. (1341), 면제(1352).
Est 家	cow(1323 : 10s.)	30s. (1324), 면제(1354)
Hethe-Canon 家	bowl(1316~17 : 2s.), affer(1346 : 4s.)	40s. (1316~17), 면제(1353)
Heycroft 家	affer(1321~2 : 10s.), affer(1341 : 5s.) affer(1349)	26s. 8d. (1296), 30s. (1343), 면제(1353)
Hurne-Alynote 家	면제(1326), cow(1349), bovinulus(1349)	26s. 8d. (1296), 면제(1328), 면제(1354)
Oldman 家	carthorse(1349), carthorse(1349)	26s. 8d. (1296), 면제(1353), 10s. (1354)
Waldrugge 家	cow(1301)	26s. 8d. (1290~1), 50s. (1302~3)
Waleys 家	1s. 현금(1315~16), affer(1331 : 5s.)	20s. (1290~1), 30s. (1331)
Weylond-Muleward 家	affer(1349)	26s. 8d. (1290~1), 20s. (1313), 40s. (1318~19), 면제(1353), 면제(1358)
Wyte-Burdon 家	heifer(1296 : 3s.), affer(1298 : 5s. 6d.), affer(1349)	24s. (1298), 30s. (1316~17) 면제(1354)

165) MM 5906 mem. 1.

166) Ibid.

167) MM 5840.

아니든 간에 미망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시 징수되었다. 따라서 미망인이 재혼하는 경우는 그녀의 두번째 남편이 토지보유허가세를 납부하고 토지의 보유인이 되었다. 이 경우 두번째 남편의 상속인이 그 토지에 대해서 상속권을 가졌는지는 분명하지 않다.¹⁶⁸⁾ 사당세와 토지보유허가세는 가끔 전체 혹은 일부가 면제되기도 하였는데, 이것은 새로운 토지보유자의 경제 사정을 고려해 준 결과로 보인다.

1279~1349년 사이에 지불된 사당세와 토지보유허가세의 기록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2)一家의 보유지는 가족 내에 남아 있어야 한다는 원칙은 더 나아가서 한 촌락 공동체의 토지는 그 공동체 내에 남아 있어야 한다는 믿음과 결부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¹⁶⁹⁾ 이 같은 사실은 Cuxham 내의 판습지가 다른 마을 사람들에게 양도된 예가 없다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으며, 미혼 상속녀가 촌락 의부인과 결혼하여 떠나면 그 토지는 영주에게 귀속되었던 예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¹⁷⁰⁾

3) 그러나 Cuxham 촌락에서의 상속원칙이 장자상속의 원칙이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Cuxham 촌락이 속하고 있는 Midlands 지역은 장자상속의 원칙이 지배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¹⁷¹⁾ 그렇지만

168) Oldman 家의 예를 보면 상속권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도표 9 참조). 다른 영지에서의 연구도 전남편의 토지를 가지고 재혼하였던 여인이 사망하였을 경우 그 토지가 첫번째 남편의 상속인에게 귀속되지 않고 두번째 남편에게 남아 있는 예를 보여준다. G.G. Homans, *English Villagers of the Thirteenth Century*, p. 181; E. Miller and J. Hatcher, *Medieval England; Rural Society and Economic Change 1086-1348*(London, 1978), p. 136; Faith는 한 농가의 보유지가 사라져 一家가 몰락하는 원인을 추적하면서 그 이유중의 하나를 미망인의 상속판습으로 들리고 있다. 즉 一家의 전체 보유지를 가지고 재혼함으로써 그 재산이 두번째 남편에게 귀속되어버렸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R.J. Faith, "Berkshire: Fourteenth and Fifteenth Centuries," P.D. A. Harvey, *The Peasant Land Market in Medieval England*, p. 160. Peterborough 수도원영지에서도 같은 예를 볼 수 있다. 참고, "13~14세기 英國農民의 土地去來", p. 179.

169) 이 역시 호만스 아래의 공통된 견해이다. 'The blood of the village'에 계상속의 우선권이 부여되었다. G.C. Homans, *English Villagers of the Thirteenth Century*, pp. 122, 216.

170) 앞의 Bovechriche 家의 Matilda Bovecheriche 가 그같은 경우이다(도표 3 참조).

Cuxham의 장원법정기록은 父에서 상속을 받은 子가 장자인지는 나타내지 않고 있다.

4) 그런데 Cuxham 촌락의 장원법정문서는 父의 토지가 상속인인 그의 子에게 직접 양도되었던 것이 아님을 나타낸다. 모든 경우에 있어서 토지 보유인이 사망하였을 경우 그 토지는 우선 미망인에게 넘겨지고 있다. 이 경우 남편의 보유지에 대한 아내의 권리라는 상속인으로서의 권리가 아니라 공동보유자로서의 권리였던 것으로 해석된다. 아내가 남편과 함께 가보유지의 공동보유인이었다고 해석되는 것은 아내가 남편의 토지를 보유하는 경우에는 토지보유허가세를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¹⁷²⁾ 이 같은 사실은 공동보유자로서의 남편이 사망한 이후에는 자연히 아내가 단독으로 가보유지의 보유인으로 되었기 때문에, 사망세만 납부하고 토지보유허가세는 납부하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에 나타났던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중세시대의 법률에 의하면 남편의 재산에 대한 아내의 권리라는 과부산 (dowry)으로 표현되고 있다.¹⁷³⁾ Common Law에 의하면 dowry는 남편 재산의 3분의 1이 보편적인 것으로 나타나나 그것은 자유인에게 적용되었던 것이고, 농민들의 경우는 많은 경우가 남편의 재산 전체였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¹⁷⁴⁾ 법률상의 관점에서 보면 Cuxham 촌락에서의 아내의 권리

171) G.C. Homans, "The Rural Sociology of Medieval England," pp. 33~42; "The Explanation of English Regional Differences," pp. 18~34. Homans의 견해에 대해서 Faith는 약간의 이견을 제시하고 있다. R.J. Faith, "Peasant Families and Inheritance Customs in Medieval England," Appendix I, II 참조.

172) Raftis와 Macfarlane도 같은 이유로 아내는 공동보유자였다고 말한다. J.A. Raftis, *Tenure and Mobility*, p. 36; Alan Macfarlane, *The Origins of English Individualism*, p. 118. 그러나 다른 영지에 대한 연구의 예는 미망인이 토지보유허가세를 납부했던 사실을 밝히고 있다. E. King, *Peterborough Abbey, 1086~1310: A Study in the Land Market*(Cambridge U.P., 1973), pp. 182~88; 그리고 "13~14세기 英國農民의 土地去來", pp. 176~77, no. 79) 참조.

173) F. Pollock and F.W. Maitland, *The History of English Law*, ii, pp. 420~27; E. Miller and J. Hatcher, *Medieval England: Rural Society and Economic Change, 1086~1348*, pp. 135~6; G.C. Homans, *English Villagers of the Thirteenth Century*, pp. 177~80.

174) F. Pollock and F.W. Maitland, *The History of English Law*, ii, p. 427.

는 남편 재산 전체에 대하여 아내가 권리を持つ dowry로 해석이 되나, 장원의 어느 문서에서도 dowry에 대한 언급은 나타나지 않는다.

5) Cuxham 장원의 문서도 일부 영지의 연구에서 밝혀진 은퇴제의 관습이¹⁷⁵⁾ 존재했음을 보이고 있다. 은퇴는 혈연상속인에게 경작지를 양도하고 은퇴하는 경우와 他家의 사람에게 양도하고 은퇴하는 경우로 두 가지가 나타난다. 전자의 경우가 Bovecheriche 家의 경우이며, 후자의 경우가 Adam Brian의 경우이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Joan Bovecheriche는 1311 ~12년에 그녀의 아들 Elia에게 $\frac{1}{2}$ 벼게트의 토지를 양도하고 그녀 자신은 cottage에 은퇴하였다.¹⁷⁶⁾ 다른 경우인 Adam Brian은 1336년에 $\frac{1}{2}$ 벼게트를 영주에게 양도하고 역시 cottage에 은퇴하였다.¹⁷⁷⁾

그렇지만 Cuxham 장원에서의 은퇴는 일부 다른 영지의 연구에서 보이는 것처럼 은퇴자가 새로운 보유자로부터 부양이나 부조를 받았던 것 같지는 않다.¹⁷⁸⁾ 대신 일정한 토지가 팔린 cottage를 보유하여 생계를 유지했던 것으로 나타난다.¹⁷⁹⁾

6) 女保有人에 대한 규제나 미망인에 대한 재혼의 강요는 적영지 경작을 위한 부역의 제공 및 경작지 유지와 같은 연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¹⁸⁰⁾

그런데 Cuxham의 문서는 여보유인에 대한 반대나 또는 미망인에 대한 결혼강제의 적법적인 기록을 남기고 있지는 않다. 그렇지만 여러 경우 미망인이 재혼을 하고 있다. 또 미망인이 남편의 토지를 보유할 때에 그 토

175) G.C. Homans, *English Villagers of the Thirteenth Century*, pp.144~59; J.A. Raftis, *Tenure and Mobility*, pp.42~5; E. Miller and J. Hatcher, *Medieval England*, p.135.

176) MM 5834.

177) MM 5913.

178) Ramsey 수도원 영지에서는 부양협약의 이행을 장원법정이 엄격히 감독하였다. J.A. Raftis, *Tenure and Mobility*, pp.43~44. 1318년의 Wistow의 법정 판결과 1334년의 Warboys의 법정 판결은 이 점을 매우 잘 나타내주고 있다.

179) Adam Brian은 2에 이커의 토지를, Joan Bovecheriche는 6에 이커의 토지를 cottage와 함께 보유하였다(주 51), 64) 참조).

180) G.C. Homans, *English Villagers of the Thirteenth Century*, p.188; J.A. Raftis, *Tenure and Mobility*, p.40.

지를 잘 관리하겠다고 서약을 하고 보증인을 세우기도 하였다.¹⁸¹⁾ 이와 같은 상황으로 미루어 보아 Cuxham 촌락에서도 미망인에 대해서, 특히 적영지에 대한 부역의 의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었거나 또는 자신의 토지를 잘 경작할 수 없었던 젊은 미망인에 대해서는 재혼을 요구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1311~43년까지 32년 간이나 떨만 데리고 토지를 보유할 수 있었던 Alice Revelove의 경우는 예외적인 것으로 생각되며, 고용노동자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7) 당시는 보유지가 매우 중요했고 그런만큼 보유한 토지에 따라서 성이 결정되거나 바뀔 수 있었음을 보인다. 토지를 보유한 미망인이 재혼하였을 경우 두번째 남편의 성이 토지보유자였던 첫번째 남편의 성을 따랐던 것은 같은 때락에서 이해가 된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1296년 Robert Oldman의 미망인 Agnes와 결혼한 Robert Waldrugge가 그 후 Robert Oldman으로 불렸고, 1316~17년 Sarah le Wyte와 결혼 후 Gilbert le Wyte로도 불렸던 Gilbert Burdon이 그 예이다.¹⁸²⁾ 그러나 남편의 권리로부터가 아니라 상속녀로서 토지를 보유했던 여인의 경우는 달랐다. 1296년 상속녀였던 Christina atte Hethe와 결혼하여 관습보유성이 되었던 William atte Heycroft가 그 예로, William은 당시 Heycroft라는 성을 유지하였으며, 그의 사후 Christina도 당시 Christina atte Hethe로 불렸다.¹⁸³⁾

Cuxham의 기록은 *母*의 성을 따랐던 경우도 보이는데 이 역시 토지의 보유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 경우는 Christina atte Heycroft의 아들로서 그는 일반적으로 Robert atte Heycroft로 불렸으나 Robert Kyttin

181) Cuxham 장원문서에서 이같은 기록은 종종 나타난다. 예를 들면 1301년 Robert Waldrugge가 사망한 후 그의 처 Alice는 영주에게 총성의 서약과 보유지를 잘 유지하겠다고 서약을 하였다. 그때 Richard Est와 William atte Heycroft가 보증인으로起到了 서약하고 있다(MM 5907 mem. 6).

182) 1296년 결혼할 때에는 Robert Waldrugge였으나(MM 5907 mem. 3), 1297년의 기록은 Rbbert Oldman으로 나타난다(MM 5907 mem. 4).

183) 그의 결혼은 1296년이었다(MM 5907 mem. 3). Christina에 대한 기록은 1321~22년 그녀의 남편이 사망할 때까지는 나타나지 않으나 그후 그녀는 Christina atte Heycroft로 나타난다.

으로도 알려져 있다.¹⁸⁴⁾ 또 다른 경우는 Alina in le Hurne의 아들로 처음에는 항상 Richard in le Hurne로 불렸으나 마침내는 Richard Alynote로 父의 성을 따르고 있다.¹⁸⁵⁾ 이들 경우는 토지보유인인 母의 성을 따르던 아들이 성장 후 토지를 상속받은 후에는 父의 성을 회복하여 사용한 예로 보인다.

III. 빈농(cottager)의 상속관습

1. 빈농의 구성

Cottage와 몇 에이커의 토지를 보유하였던 것으로 추정되는 빈농들은 $\frac{1}{2}$ 베게트의 토지를 보유하였던 관습보유농들보다 훨씬 가난한 예속농민들이었다.¹⁸⁶⁾ 이들에게는 직영지 경작의 수단이었던 주부역의 의무가 없었기 때문에¹⁸⁷⁾ 장원의 기록에 별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들 빈농에 대한 개별농가의 상속현황과 또 일반적인 상속관습을 정확하게 알아내기가 어렵다. 1296년 경 이후 8~9가구로 나타나는 이들 농가의 구성을 <표 3>과 같다.

184) 1353년 William Amy가 보유하게 된 'Robert Kyttin의 것이었던 보유지' (MM 5916)는 1349년 이전에 Robert atte Heycroft가 보유했던 것과 일치한다.

185) 1328년 Richard in le Hurne로 토지를 보유하게 되었지만(MM 5909 mem. 2), 1329년에는 Richard Alynote라는 이름으로 총성을 서약하고 있다(MM 5911).

186) 이들은 cottage와 5에이커 정도의 토지를 보유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나, 빈농들이 보유했던 토지 규모에 대한 기록은 나타나지 않는다. 일반적인 연구는 빈농들도 5에이커 정도의 토지로 보유했던 것으로 나타난다. Frederic Seebohm, *The English Village Community*(Cambridge U.P., 4th edn., 1926), p. 197; E. Lipson, *The Economic History of England. i.* (London, 12th edn., 1959), p. 47; J. L. Bolton, *The Medieval English Economy*(London, 1980), p. 19.

187) 그러나 가을에 부과되는 며칠간의 특별부역(boon work)의 의무는 있었다. 그렇지만 빈농들은 일반적으로 주부역의 의무가 없었다. J. L. Bolton, *Ibid.*, p. 19.

〈표 3〉 벽동의 구성

현 도 부-유인	연 도 MM 4122	1296년 경 MM 5899	1296~97년 MM 5899	1329년 MM 5911	1347년 MM 5874 mem. 2	1349년 MM 5874 mem. 6
Bovetoun 家	—	Richard Turne-stone	Galfridus Bove-tonn	Robert messor	Robert messor	Robert messor
Turnestone-Deyere 家	—	Matilda Engleys	Hygeleys filia Thomas Clerk	—	Richard le Deyere	Richard le Deyere
Engleys-Aumoner 家	—	William Stoylepe	Agnes Stoylepe	William Maucornyes	Alice Aumoner	Alice Aumoner
Stoylepe-Maucornyes 家	—	Walter Luceprect	Henry le Dryver	John atte Beche	—	—
Lucepret-Dryver 家	—	Jordan filius Reginald	Hugo le Carter	Margiria le Dryver	Henry Dryver	Henry Dryver
Jordan-Carter 家	—	William Jolif	Hugo le Carter	—	—	—
Jolif-Gardiner 家	—	Nicholas Sawyere	Matilda Jolif	Matilda le Gardiner	Henry le Gardiner	Henry le Gardiner
Sawyere-Croume 家	—	—	Nicholas Sawyere	Thomas le Sawyer	Richard Croume	Richard Croume
Bovecheriche 家	—	—	—	Matilda Bovecheriche	—	—

2. 각 농가의 상속현황

1) Bovetoun(Heyward: messor)家

Geoffrey Bovetoun은 1304년 영주로부터 집터와 약간의 토지를 받아 자신의 평생 동안 보유하는 조건으로 6s. 8d.의 토지보유허가세를 납부하였다. 집터와 토지에 대한 지대는 매년 2s.이었으며, 가을에 1인의 2일간의 추수부역을 수행하여야 했다.¹⁸⁸⁾

Geoffrey가 보유했던 cottage는 1346년 그의 아들 Robert Bovetoun에게 상속되었으며, Geoffrey에 대한 사망세는 규정이 없어서 정수하지 못하였다.¹⁸⁹⁾ Geoffrey는 1315~16년부터 사망하던 1346년까지 전초판리인 (heyward)이었던 것으로 나타나며, 그 직이 아들 Robert에게 승계된 것으로 보인다.¹⁹⁰⁾ 혹사병 이후 Bovetoun家가 보유하던 cottage가 어떻게 승계되었는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¹⁹¹⁾

2) Turnestone-Deyere家

Richard de Turnestone은 적어도 1297~98년부터 cottage의 보유자로서 1306년 사망할 때까지 보유하였다.¹⁹²⁾ 같은 해에 Richard의 처 Matilda는 그녀의 남편이 그 자신과 그의 아내 Matilda의 평생으로 cottage에 토지보유허가세를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며 그녀가 cottage에 대한 보유권이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¹⁹³⁾ 그런데 1306~07년의 장원회계문서의 기록은 Matilda가 3s.의 토지보유허가세를 면제받았음을 나타내고 있다.¹⁹⁴⁾

이후의 기록은 1313년에 나타나는데 Robert Deyere가 영주로부터 위의 cottage를 매년 3s.의 지대로 평생 동안 보유하게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

188) MM 5907 mem. 8.

189) MM 5915.

190) 전초판리인을 나타내는 messor가 이를 뒤에 성을 대신하여 Geoffry Messor, Robert Messor로 표기되고 있다.

191) 그 이유는 장원법정문서가 1346년 12월 16일(MM 5915) 이후 1352년 3월 20일(MM 5916)까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192) MM 5899.

193) MM 5907 mem.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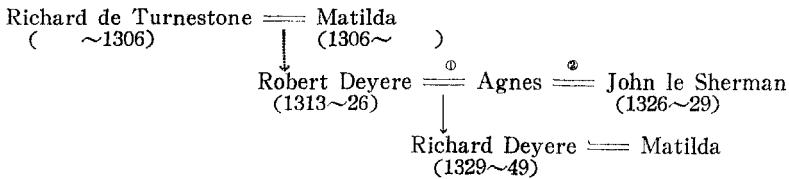
194) Appendix VII.

어¹⁹⁵⁾, Matilda의 사후에 그녀의 cottage가 영주에 귀속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Robert는 1321년에는 $3\frac{1}{2}$ 에이커의 토지를 매년 5s. 3d.의 지대로 추가로 보유하기 시작하였다.¹⁹⁶⁾ Robert Deyere가 언제 사망하였는가는 알 수 없으나 적어도 1326년까지는 사망했던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Robert의 처 Agnes가 1326년 John le Sherman과 재혼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¹⁹⁷⁾ 그런데 1329년에는 Robert Deyere의 아들 Richard Deyere가 John le Sherman이 반납한 집터와 $3\frac{1}{2}$ 에이커의 토지를 그와 그의 처 Matilda의 평생동안 13s. 4d.의 토지 보유허가세로 보유하게 되었다.¹⁹⁸⁾

Richard Deyere는 1349년 2월까지 생존하여 기록에 나타나고 있으나¹⁹⁹⁾, 후사명 이후에는 누가 그의 보유지를 승계하였는지 알 수가 없다.

Turnestone-Deyere 家의 상속계판는 <도표 14>와 같다.

<도표 14> Turnestone—Deyere 家의 상속관계



3) Engleys-Aumoner 家

1279년의 문서는 Gilbert Engleys의 딸인 Matilda가 cottage를 잘 관리하겠다고 선서했던 기록을 나타내고 있다.²⁰⁰⁾ 1296년 경의 장월법정문서 역시 Matilda Engleys가 그 cottage의 보유인으로 나타난다.²⁰¹⁾ 그러나 1297~98년의 판습기록부는 보유인이 Hygeleys filia Thomas Clerk으로 나타나고 있다.²⁰²⁾ Hygeleys는 Matilda와 전남편 Thomas 사이의 소생으로

195) MM 5908 mem. 3.

196) MM 5908 mem. 7.

197) MM 5908 mem. 5 dorse.

198) MM 5911.

199) MM 5874 mem. 6.

200) MM 5906 mem. 1.

201) 당시 8인의 반농 가·유네 1인 이었다(표 3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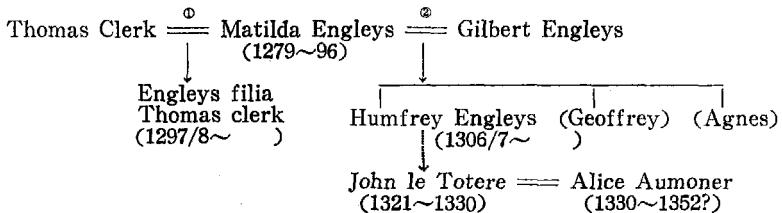
202) MM 5899.

생각된다.²⁰³⁾ 그 후 이 cottage는 Matilda의 아들 Humfrey Engleys가 1306~07년에 보유하게 되었다.²⁰⁴⁾ 1294년과 1299년에 나타나는 Geffrey Engleys와 Agnes Engleys는 Humfrey의 동생들로 보이나 기록상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²⁰⁵⁾

이 cottage에 대한 다음의 기록은 1321년에 나타난다. 그때 John le Totere는 그의 아내인 Alice Aumoner와 함께 그 cottage에 들어갔다.²⁰⁶⁾ John은 1330년에 그 cottage에 대하여 충성을 서약하였으나²⁰⁷⁾, 같은 해에 사망하였고 그의 처 Alice가 토지보유허가세를 면제받고 그 cottage를 보유하게 되었다.²⁰⁸⁾ Alice는 혹사병 직후인 1352년에도 생존하였으나²⁰⁹⁾, 그 후의 기록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Engleys-Aumoner 家의 상속관계는 <도표 15>와 같다.

<도표 15> Engleys-Aumoner 家의 상속관계



4) Stoylepe-Maucornyes 家

1276~77년의 기록은 William Stoylepe가 빙농였음을 나타내며²¹⁰⁾, 1296년 경의 장원법정문서 역시 William이 빙농 중의 1인이었음을 나타내고 있다.²¹¹⁾ 그 후 이 cottage는 1297~98년에 그의 처로 보이는 Agnes Stoylepe

203) Cottage 가 Matilda의 사망 후에 전남편의 상속인에게 귀속된 예로 생각된다.

204) 7d.의 토지보유허가세가 면제되고 있다(Appendix VII).

205) 1294년(MM 5907 mem. 1), 1299년(MM 5907 mem. 5).

206) MM 5908 mem. 7.

207) MM 5911.

208) 사망세는 장원판습에 의하여 지불하지 않았다(MM 5909 mem. 1).

209) 그해에 Cuxham 장원의 영주인 Merton College 학장에게 충성을 서약한 cottager 4인 가운데 1인이다(MM 59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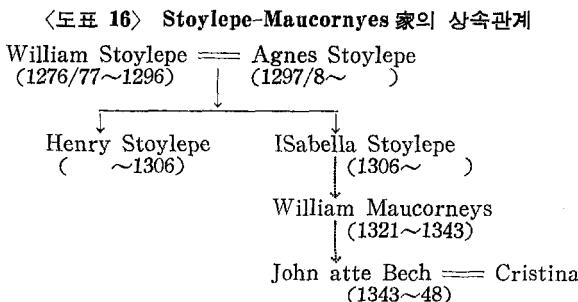
210) MM 5830 mem. 3.

211) 표 3 참조.

가 보유자로 나타난다.²¹²⁾ 그런데 1306년의 기록은 Agnes 가 이미 사망하여 cottage 는 그녀의 아들 Henry Stoylepe 가 보유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Henry 는 그 해에 자신의 父인 William Stoylepe 의 가장 가까운 상속인이 누구인가를 물어 장원법정으로부터 Henry 자신임을 확인받고 있다.²¹³⁾ 그러나 역시 같은 해의 기록은 Henry 의 여자 형제인 Isabella Stoylepe 가 18d. 의 토지보유허가세로 세 보유인이 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다.²¹⁴⁾

Isabella 가 언제까지 cottage 를 보유했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1321년에는 그 cottage 가 영주로부터 William Maucourney 에게 18d. 로 양도되었다.²¹⁵⁾ 그 후 William 의 cottage 는 1343년에 John atte Bech 에게 다시 넘어가고 있다.²¹⁶⁾ John 은 혹사병까지 생존한 것으로 보이나²¹⁷⁾, 그 후에는 누가 그 cottage 를 보유하게 되었는지 알 수가 없다.

이들의 cottage 승계는 <도표 16>과 같다.



5) Lucepre-Dryver 家

Thomas Lucepret 는 1279년에 cottage 를 보유하기 시작하여 cuxham 장원의 빙농이 되었으며, 개방경지(open fields)에 경작지 지조(strip)를 보

212) MM 5899.

213) 당시에 Henry 는 cottage 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확인소송의 수수료로 6d. 를 지불하였다(MM 5907 mem. 8 dorse).

214) 1306~07년의 장원회계문서는 Isabella 가 18d. 의 토지보유허가세 가운데서 12d. 를 면제 받은 사실을 나타낸다(Appendix VII).

215) MM 5908 mem.7.

216) 토지보유허가세는 2s. 이었다(MM 5914 dorse).

217) 1347년 7월의 기록에도 토지보유인으로 나타난다(표 3 참조).

유하고 있다고 언급되는 유일한 빙농이 있다.²¹⁸⁾ 이 cottage는 1296년과 1297~98년에는 Walter Lucepret가 보유했던 것으로 나타난다.²¹⁹⁾

그 후의 기록은 1321년에 나타나는데, 그때 Henry le Dryver와 그의 처 Margeria가 cottage와 $1\frac{1}{2}$ 에이커의 토지에 13s. 4d.의 토지보유허가세를 납부하고 평생 보유하게 되었다.²²⁰⁾ Henry는 직영지의 머슴(famulus)으로 1327년부터 20년간 직영지에서 파종을 담당했던 것으로 보인다.²²¹⁾ Henry의 사망 후에는 그의 처 Margeria가 보유인이 되어 흑사병 직전인 1347년 7월의 기록에 나타나고 있다.²²²⁾

6) Jordan-Carter 家

1296년 경의 기록은 Reginald의 아들 Jordan이 Cuxham 장원의 한 빙농임을 나타내고 있다.²²³⁾ 그러나 1~2년 후인 1297~98년의 기록은 그의 처로 보이는 Alice가 보유인으로 나타난다.²²⁴⁾ Jordan의 아들 Elias는 1304년 추수 시기에 영주에 끼친 손해로 벌금을 물었던 기록을 남기고 있으나²²⁵⁾, 그가 父의 cottage를 승계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그 후의 기록은 1329년에 나타나는데 이때 직영지의 머슴이었던 Hugo le Carter가 그 cottage를 보유하고 있었다.²²⁶⁾ Hugo는 1341년에는 Adam Brian이 보유하던 $\frac{1}{2}$ 에이커의 토지를 보유하게 되어 관습보유농으로 발전하고 있다.²²⁷⁾

7) Jolif-Gardiner 家

1296년의 기록은 William Jolif가 cottage의 보유인으로 나타난다.²²⁸⁾ 그

218) 경작지 면적은 $1\frac{1}{2}$ 에이커이다.

219) MM 5899.

220) 지대는 매년 3s.이었다(MM 5908 mem. 7).

221) 그에 대한 급료가 같은 해부터 기록되고 있다.

222) MM 5874 mem. 2(표 3 참조).

223) MM 4122(표 3 참조).

224) MM 5899.

225) 벌금액은 6d.였다(MM 5907 mem. 8).

226) MM 5911.

227) MM 59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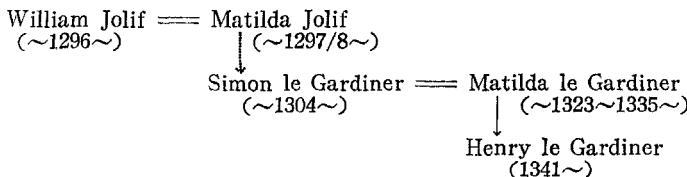
228) MM 4122(표 3 참조).

리나 1~2년 뒤인 1297~98년에는 그의 처로 보이는 Matilda Jolif 가 그 cottage 를 보유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²²⁹⁾

그런데 1304년의 세금사정을 위한 동산의 조사기록에는 Simon le Gardiner 가 그 cottage 의 보유인으로 나타나고 있어²³⁰⁾ Matilda Jolif 의 사후에 보유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Simon le Gardiner 의 사후에는 그의 처인 Matilda le Gardiner 가 cottage 를 양도받은 것으로 보이나 그 해가 언제였는지는 나타나지 않는다.²³¹⁾ Matilda 의 사망 후 1341년에 그녀의 cottage 는 그녀의 아들인 Henry le Gardiner 에게 12d. 의 토지보유허가세로 양도되었다.²³²⁾ Henry 는 1349년 초까지 그 cottage 를 보유하였으나²³³⁾, 흑사병 기간에 Grene 家 의 토지보유인이 되었다.²³⁴⁾ Henry 가 고유하던 cottage 는 1352년 3월 이후 영주에 귀속되었으나,²³⁵⁾ 누가 그 뒤를 이어서 토지의 보유인이 되었는지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들의 cottage 속계는 〈도표 17〉과 같다.

〈도표 17〉 Jolif-Gardiner 家의 상속관계



8) Sawyere-Croume 家

Nicholas Sawyere 는 적어도 1279년부터 1297~98년까지 cottage 의 보유

229) MM 5899.

230) 당시 cottager 로서는 유일하게 동산에 대한 파세 데상이었다. Simon le Gardiner 의 동산평가액은 2s. 8d. 였다. 그런데 관습보유농 가운데 가장 적은 금액으로 평가된 Roger Waleys 는 8s. 10d. 였다(MM 5905).

231) Matilda 는 1323년(MM 5908 mem. 9), 1329년(MM 5911), 1335년(MM 5908 mem. 10)에 토지보유인으로 나타난다.

232) MM 5913.

233) MM 5874 mem. 6.

234) 본 논문 p. 69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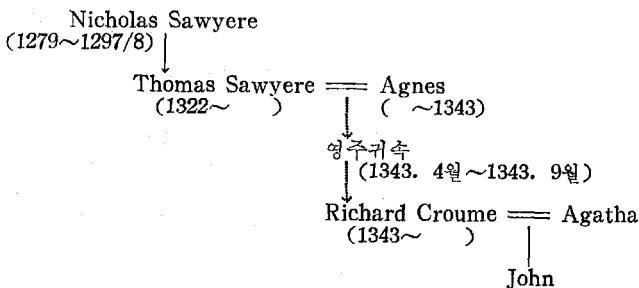
235) 1352년 3월(MM 5916), 1353년 1월(MM 5916).

인으로 기록되어 있으며²³⁶⁾, 그의 父는 Hugo Sawyere 로 기록되어 있다.²³⁷⁾ 그런데 1322년 Thomas le Sawyere 는 영주로부터 2개의 cottage 를 양도받아 보유하고 있다.²³⁸⁾ 이 보유지는 1343년 Thomas 의 처 Agnes 가 사망함에 따라 영주에 귀속되었다. 이때 Agnes 는 사망세로 지불할 것이 없어서 면제받고 있다.²³⁹⁾

1343년 4월 영주에 귀속되었던 cottage 가운데 하나가 1343년 9월 3s. 4d. 의 토지보유허가세로 Richard Croume 와 그의 처 Agatha 그리고 그의 아들 John 의 평생으로 Croume 家에 양도되었다.²⁴⁰⁾ Richard Croume 는 흑사병 후까지도 살아남아 Grene 家의 보유인이 되었으나 그가 보유하면 cottage 는 영주에 귀속되었다.²⁴¹⁾

이들의 cottage 속계는 <도표 18>과 같다.

<도표 18> Sawyere-Croume 家의 상속관계



3. 상속관습의 특징

이제까지 살펴본 각 농가의 상속 현황으로부터 빙농들의 재산 상속에는 관습보유농들의 상속관습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았음을 분명히 알 수가 있

236) 1279년 (MM 5906 mem. 1), 1297~98년 (MM 5899).

237) MM 5906 mem. 1.

238) 토지보유허가세가 2s. 이었고, 지대도 매년 2s. 이었다 (MM 5908 mem. 8).

239) MM 5914.

240) MM 5914 dorse.

241) 본 논문 p. 69 참조. Cottage 의 영주 귀속은 1352년 3월의 장원법정문서에 나타난다 (MM 5916.).

다. 물론 빈농들의 보유지도 촌락공동체 내에 남아 있어야 했으며 여성이나 cottage의 보유인이 될 수 있었던 공통점은 있었으나, 빈농들의 보유지는 공통된 관습에 의해서가 아니라 개별적인 계약에 의해서 보유되었던 점이 두드러진 차이점으로 나타난다. 물론 빈농들도 관습보유농들처럼 父의 토지에 대하여 상속권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면 1346년 Robert Bovetoun은 그의 父 Geoffry Bovetoun의 사망시에 상속인의 권리로서 그의 父가 보유하던 cottage의 보유를 요구하고 있다.²⁴²⁾ 그러나 cottage의 보유는 일반적으로 세대 기간이었다. 1341년 Henry le Gardiner의 경우처럼 당사자 자신의 평생이거나²⁴³⁾, 1321년 Henry le Dryver처럼 Henry 자신과 그의 아내의 평생 동안이었다.²⁴⁴⁾ 또는 1343년 Richard Croume처럼 그와 그의 처 그리고 그의 아들의 평생 동안이었다.²⁴⁵⁾

빈농들 역시 처음으로 cottage를 보유하게 될 경우 토지보유허가세를 납부해야만 했다. 그렇지만 그들의 토지보유허가세는 관습보유농들의 그것보다 훨씬 낮아서 10s. ~ 1s. 까지 였다.²⁴⁶⁾ 그렇지만 이같은 차이점보다 훨씬 더 두드러졌던 차이점은 빈농들의 토지보유허가세는 보유자가 바뀔 때마다 부과될 수 있어, 미방언에게도 부과되었다는 점이다. 비록 미방언이 그녀 남편의 토지보유허가세가 그녀 자신의 평생까지를 포함했던 것이라고 주장하는 하나의 예가 있기는 하나²⁴⁷⁾, 그와 같은 것은 일반적인 관습이 아니었다.

관습보유농들과 달랐던 또 다른 관습은 사망세의 부과 문제였다. 많은 경우 빈농들에게는 사망세가 부과되지 않았다. 어떤 경우는 장원법정문서에 빈농들로부터는 사망세를 받을 수 없다고 명기해 놓기도 하였다.²⁴⁸⁾

242) MM 5915.

243) MM 5913.

244) MM 5908 mem. 7.

245) MM 5914.

246) 관습보유농들의 토지보유허가세는 20s. ~ 50s. 이었다(표 2 참조).

247) 1306년 Richard Turnestone의 미방언 Matilda가 그같이 주장하였다. 그려 나 그녀는 결국 3s. 의 토지보유허가세를 납부하였다(MM 5907 mem. 8 dorse).

248) 1330년 John le Totere의 미방언 Johanna가 그녀의 남편에 대한 사망세를

그렇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빈농들도 사망세를 지불하기도 하였다.

요컨대 빈농들은 일정한 판습에 의하여 보유지를 상속했던 것이 아니라 영주와의 개별적인 계약에 따랐기 때문에 보유자들의 손이 자주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그때 적용되는 토지보유허가세나 상속세도 각 농가에 따라 달라졌던 것을 알 수 있다.

IV. 흑사병이 미친 영향

흑사병의 영향은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것이었다. 흑사병이 Cuxham 장원촌락을 강타한 것은 1348년 겨울과 다음 해 봄이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이 기간 동안에 Cuxham의 주민들은 많은 수가 사망하였다. 1349년 2월 장원법정문서에 나타나는 12명의 판습보유농은 그해의 흑사병에 모두 희생되었다.²⁴⁹⁾ 8인의 빈농도 4인만이 살아 남았다.²⁵⁰⁾ 1349년 4월에 끝나는 장원회계문서에는 5명의 판습보유농에 대한 사망세가 기록되어 있으며²⁵¹⁾, 그 후 6월 23일까지 5명의 사망세가 더 기록되고 있다.²⁵²⁾

그런데 1346년부터 1352년 사이의 기간에는 장원법정문서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 기간 동안에 장원법정문서가 부재하기 때문에 흑사병 적후의 영향에 대한 생생한 증거는 상실되어버린 셈이다. 그렇지만 흑사병 이후 제일 먼저 남겨진 1352년 3월의 법정문서로도 흑사병의 영향을 충분하고도 분명히 알 수가 있다. 법정문서는 13개의 판습보유지 가운데 9개의 보유

지불하지 않았다. 그 후 장원법정에서의 조사는 cottager들의 사망세는 판습에 의하여 누구도 사망세를 지불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MM 5909 mem. 1).

249) John le Canon, Elia Bovecheriche는 흑사병 이전에 사망하였는데 누가 그 보유지를 계승하였는지는 불분명하다. William Waldrugge 역시 1348~49년에 사망하여 1349년에 그의 토지에 장원판리인이 파종하고 있다(MM 5875 mem. 1). 1349년 4월과 6월에는 Oldman家를 비롯하여 모두 10인의 사망이 기록되고 있다(MM 5875 mem. 2, MM 5875 mem. 1).

250) Henry le Gardiner, Richard Croume, Richard Magote, Alice Aumoner 이다.

251) MM 5875 mem. 2.

252) MM 5875 mem. 1.

〈표 4〉 흑사병 이후 관습보유농의 변화

영주	영주	영주	영주	영주	영주	영주	영주
Aumoner 家	Emma Aumoner	Emma Aumoner	Robert Magote				
Beneyt 家	Emma le Revelove	Emma le Revelove	John Lacheford				
Bovecheriche 家	Elia Bovecheriche	Elia Bovecheriche	Hugo le Carter				
Brian-Carter 家	Hugo le Carter	Hugo le Carter	Richard Est				
Est 家	Richard Est	Richard Est	Johnna le Canon				
Hethe-Canon 家	Johnna le Canon	Johnna le Canon	Robert atte Heycroft				
Heycroft 家	Robert atte Heycroft	Robert atte Heycroft	Richard Alynote				
Hurne-Alynote 家	Richard Alynote	Richard Alynote	Robert Oldman				
Oldman 家	Robert Oldman	Robert Oldman	William Waldrugge				
Waldrugge 家	William Waldrugge	William Waldrugge	Robert Waleys				
Waleys 家	Robert Waleys	Robert Waleys	Richard Muleward				
Weylond-Muleward 家	Richard Muleward	Richard Muleward	Gilbert Burdon				
Wyte-Burdon 家	Gilbert Burdon	Gilbert Burdon					

부호	성	1353. 5. 31 MM 5917	1354. 4. 25 MM 5917	1354. 12. 15 MM 5917 dorse	1358. 4. 30 MM 5920 dorse
Aumoner 家	Robert Magote	Robert Magote	Robert Magote	Robert Magote	Robert Magote
Beneyt 家	ങ주	ങ주	ങ주	John le Nappere	John le Nappere
Bovecleriche 家	ങ주	ങ주	ങ주	John le Calwe	John le Calwe
Brian-Carter 家	John Lacheford	John Lacheford	John Lacheford	John Lacheford	John Lacheford
Est 家	ങ주	ങ주	Richard Marion	Richard Marion	Richard Marion
Hethe-Canon 家	John Alynote	John Alynote	John Alynote	John Alynote	John Alynote
Heycroft 家	William Amy	William Amy	William Amy	William Amy	William Amy
Hurne-Alynote 家	ങ주	ങ주	John Lacheford	John Lacheford	John Lacheford
Oldman 家	John Benet	John Benet	John Benet	Thomas le Marshale	Thomas le Marshale
Waldrugge 家	Grene 家	Grene 家	Grene 家	Grene 家	Grene 家
Waleys 家	Grene 家	Grene 家	Grene 家	Grene 家	Grene 家
Weylond-Muleward 家	John Dykere	John Dykere	John Dykere	John Wadekyn	John Wadekyn
Wyte-Burdon 家	ങ주	ങ주	ങ주	Walter Burdon	Walter Burdon

지가 공한지로 영주에게 귀속되어 있음을 나타내며, 2개의 cottage 역시 보유인이 없음을 나타내고 있다.²⁵³⁾ 그런데 다음 해인 1353년 1월의 법정 문서는 3명의 판습보유농이 들어와 영주에 귀속된 공한지가 6개로 줄어들었음을 보이고 있다.²⁵⁴⁾ 그러나 영주에 귀속된 cottage는 3개로 늘고 있다.²⁵⁵⁾ 이후 1353년 5월의 장원법정문서는 판습보유농이 한 사람 더 들어왔고²⁵⁶⁾, 1354년 4월의 문서에도 또 한 사람²⁵⁷⁾, 그리고 1354년 12월의 문서에는 나머지가 들어와서²⁵⁸⁾ 모든 $\frac{1}{2}$ -_acre의 토지는 보유인을 갖게 되었다.

이 같은 상황을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Burdon 家 이외에는 모두 혈연에 의한 상속이 단절되었다. 그것은 Cuxham 촌락에서 혹사병의 영향이 위낙 커서 대부분의 토지보유인과 그 상속인들이 사망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같은 상황에 처하여 영주는 공한지로 남아있는 토지에 보유인을 유치하기에 노력은 기울인 혼적을 보인다. 무엇보다도 주부역이 전면 금납화되었다.²⁵⁹⁾ 또 새로운 토지보유인에게 부과되었던 토지보유허가세가 면제되었다.²⁶⁰⁾

토지보유인의 혈연이 단절되고 새로운 외부인에 의하여 토지가 보유되자 혹사병 이전에 유지되던 상속판습의 원칙은 무너져버리게 되었다. 이제는 다른 곳에서도 쉽게 토지를 구할 수 있게 되어 일단 정착했던 보유

253) MM 5916(표 4 참조).

254) John Benet, John Alynote, William Amy 가 판습지의 보유인이 되었다 (MM 5916).

255) Henry le Gardiner, Richard Croume, Hugo le Shepherd 의 보유지가 공한지로 영주에 귀속되었다(MM 5916).

256) John Dykere 였다(MM 5917).

257) John Lacheford 였다(MM 5917).

258) Richerd Marion, Walter Burdon, John le Calwe, John le Nappere, Thomas le Marshall 이었다(MM 5917 dorse). 이를 새로 들어온 보유인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표 4 참조.

259) 대신 대체로 매년 9s. ~ 10s.의 화폐를 지불하였다. 그러나 매년 1일간의 제초작업, 1일 간의 전초작업, 2일 간의 추수작업은 남아 있었다. 이 같은 베티는 1353년 1월 18일의 장원법정문서(MM 5916)부터 기록되고 있다.

260) 1354년 12월 Thomas le Marshall 이 Oldman 家의 보유지를 들어갈 때 지불했던 10s.의 토지보유허가세(MM 5917 dorse) 이외에는 모두 면제되었다.

인들도 더 조건이 좋은 곳을 찾아 떠났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판습 보유자는 불과 몇년 사이에 토지보유인이 바뀌기도 하였다. 예를 들면 1353년 1월 Robert Oldman의 보유지에 들어왔던 John Benet는 다음 해 12월까지는 떠났으며, Richard Muleward의 토지에 들어왔던 John Dykere 역시 5년 후에는 떠나고 있다.²⁶¹⁾

흑사병 이후 급격한 상황 변화 속에서 Cuxham 촌락 내에서의 빈 농들도 $\frac{1}{2}$ 벼게트의 토지를 보유한 판습보유농들이 되거나 또는 조건이 유리한 자유인 Grene 家의 보유인이 되었음을 나타내 촌락 내에서도 더 유리한 토지보유 조건에 의하여 보유지를 바꾼 것을 알 수 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Robert Magote, John Lacheford, Henry le Gardiner 등이다. Robert Magote는 흑사병 직전에 Cuxham 마을에 들어와서 cottage를 보유했던 것 같다. 그 후 Magote는 1352년에 Emma Aumoner 가 보유했던 토지의 세로운 보유인이 되었다.²⁶²⁾ 다른 한 사람은 John Lacheford로 그 역시 1352년에 $\frac{1}{2}$ 벼게트 토지의 보유인이 되었다. 그가 보유했던 cottage는 1356년의 기록에 의하면 영주에 귀속되었다.²⁶³⁾ John Alynote 역시 같은 경우로 그는 1353년에 John le Canon의 판습지를 보유하게 되었다.²⁶⁴⁾ 그런가 하면 cottage의 보유자였던 Henry le Gardiner 와 Richard Croume는 흑사 후 그들의 cottage를 버리고 Grene 家의 보유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들 두 사람은 Grene 家의 보유인이 된 후 변성하여 그들의 경제활동이 장원문서에 빈번히 나타나고 있다.²⁶⁵⁾

261) John Bent에 대한 기록(MM 5916, MM 5917 dorse), John Dykere에 대한 기록(MM 5917, MM 5920 dorse).

262) 1349년 2월 8일의 기록(MM 5874 mem.6)에 최초로 나타나며, 1352년 3월 20일의 기록(MM 5916)은 이미 $\frac{1}{2}$ 벼게트의 토지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263) MM 5918 dorse.

264) MM 5916, MM 5918 dorse.

265) Henry는 1356년 3마리의 폐지와 6마리의 폐지세끼에 대한 방목세로 3d. 를 납부하였으며(MM 5918), Richard는 1353년에는 5마리 폐지와 2마리 말이 칙 영지에 4년 친임하여 법정문서에 나타났고(MM 5916) 1357~58년에는 1에이커의 토지를 영주에게서 임대하여 나타났다(MM 5886, MM 5920 dorse).

흑사병 이후 상속관습이 파기되고 누구든지 혈연에 관계없이 쉽게 판습지를 획득할 수 있게 되자 그같은 변화 속에서 점차 더 많은 토지를 보유하게 되거나 또는 활발한 경제활동으로 부유농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그 가운데서 두드러진 사람은 John Lacheford 와 Thomas le Marshall 이었다. John Lacheford 는 1352년에 Hugo le Carter 가 보유하던 $\frac{1}{2}$ 버게트의 토지를 획득하였다.²⁶⁶⁾ 그런데 John 은 1354년에는 다시 Alynote 의 보유지를 갖게되어 2개의 표준관습지 보유인이 되었다.²⁶⁷⁾ 그밖에도 John 은 1356 ~57년에 영주로부터 3에이커의 목장을 임대하였으며²⁶⁸⁾, 1357~58년에는 $\frac{1}{2}$ 에이커의 경작지를 임대한 것으로 나타나²⁶⁹⁾ 토지의 축적을 통하여 부농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Thomas le Marshall 은 1354년 12월 John Benet 가 떠난 후 그 토지의 보유인이 되었다. 그런데 그 후 15개월 뒤에 Thomas 는 황폐해진 집을 임대하여, 또 영주의 허가없이 자신의 보유지를 재임대하여 장원법정문서에 나타나고 있다.²⁷⁰⁾ 또 직영지와 다른 보유인의 토지에 80마리의 양이 침입하여 여러 차례 벌금을 물고 있다.²⁷¹⁾ Thomas 역시 영주로부터 작은 규모의 토지를 단기간 임대하기도 하였다. 1357~58년에는 $\frac{1}{2}$ 에이커의 토지를 1년간 임대하였으며, 1358년에도 역시 $\frac{1}{2}$ 에이커를 영주로부터 임대하였다.²⁷²⁾ 이같은 사실을 통하여 Thomas 는 자신의 토지는 타인에게 재임대하고 자신은 대규모의 가축을 기르며 영주로부터 다른 토지를 빼 임대받아 경작하는 등 활발한 경제활동을 전개했던 것을 알 수 있다.

흑사병 이후에 나타난 새로운 현상 가운데 하나는 직영지의 분할임대였

266) MM 5916.

267) MM 5917.

268) MM 5885.

269) 임대기간은 1년이었다(MM 5886).

270) 자신의 父 John Marshall 에게 재임대하였다(MM 5918). 그러나 다음 법정에서 영주의 허락을 받지 못하였다(MM 5919).

271) 1355년 3월의 법정에서는 적어도 6번을 침입했던 것으로 나타난다(MM 5918).

272) MM 5886, MM 5920 dorse.

다. Cuxham 장원은 1353~54년부터 경작지와 목초지가 작은 면적으로 분할임대 되는 새로운 경향을 보이고 있다.²⁷³⁾ 이같은 경향은 누구든지 쉽게 토지를 획득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내 구래의 상속관습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부유농을 탄생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던 중요한 요소였음에 틀림 없다.

V. 맷 음 말

이제까지의 논의에서 알 수 있듯이 Cuxham 장원촌락의 농민들은 혹사병 이전까지는 장원의 오랜 관습으로 형성된 상속관습의 지배를 받았다. 그리하여 농민들의 토지보유권은 관습에 따른 절차를 거쳐서 다음 세대에 넘겨졌으며, 그같은 절차는 장원법정에 의하여 인가되고 감독되었다.

그런데 농민들의 상속관습은 그들이 보유하던 토지규모와 그에 따르는 주부역의 유무에 따라 관습보유농과 빈농 사이에 커다란 차이가 있었다. 관습보유농들에게는 혈연에 의한 상속, 비분할 一子(아마도 장자)상속, 배우자의 공동보유권 등이 두드러진 특징으로 나타나며, 사망세와 토지보유 혼가세의 납부로 상속이 이루어졌다. 또 이들 농민들에게는 여보유인에 대한 통제나 은퇴제의 관습이 존재하여 상속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빈농들에게 적용되었던 상속관행은 영주의 자의가 크게 작용할 수 있었던 여지를 남기고 있다. 영주와의 개별계약적 성격이 강했던 cottage의 보유문제가 바로 그것으로, 빈농들의 cottage 보유는 세대 단위로 이루어졌다. 이와 더불어 배우자의 공동보유권은 인정되지 않았고 토지보유 혼가세도 보유자의 손이 바뀔 때마다 지불되어야만 했다. 그렇지만 관습보

273) 1353~54년에 Est家의 보유지였던 2에이커의 토지와 땅밭을 2인에게 임대 한 것을 시작으로(MM 5882), 1358~59년 20에이커와 면적 미상의 목장지를 6인에게 그리고 5 $\frac{1}{4}$ 에이커의 경작지를 4인에게 분할임대한 사실을 기록할 때까지(MM 5887, MM 5920 dorse) 매년 직영지와 영주에 귀속된 관습지의 일부를 분할임대하고 있다.

유농들에게 부과되던 사방세는 빙농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다.

그런데 Cuxham 장원의 기록은 상속관습이 지배적이었던 혹사병 이전의 시기에, 더구나 전형적인 고전장원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곳에서,²⁷⁴⁾ 이미 몇몇 관습보유농들이 사적으로 토지를 매매했던 사실을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당시 Peterborough 수도원영지에서 보이는 농민들 사이의 사적 토지매매가²⁷⁵⁾ 어느정도 보편화되었던 현상임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인구파악과 토지부족이 극심했던 당시에 영주의 통제와 기존의 관습에 저촉됨에도 불구하고 비상속자녀의 토지 마련을 위하여 적은 양의 토지나마 매입하려는 경향이²⁷⁶⁾ Cuxham 장원에서도 역시 존재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준다.

혹사병의 강타와 이에 따르는 인구의 대폭 감소는 이제까지 유지되어 왔던 Cuxham 장원의 상속관습을 크게 무너뜨리고 있다. 무엇보다도 혈연에 의한 상속원칙이 혹사병 직후의 상황에서 더이상 적용될 수가 없게 되었다. 세로운 보유인들이 대부분 혈연에 관계없이 외부에서 이주한 사람들로 채워지게 된 것이다. 따라서 혹사병 직후 Cuxham 장원에서 나타났던 농민들의 토지보유 관계는, 페어쓰가 지적한 14~15세기의 토지보유 관

274) 장원의 경작자가 영주직 영지(demesne)와 농민보유지로 나뉘어 영주직 영지가 농민들의 부역에 의하여 경작되었던 점이 고전장원(classic manor)의 가장 큰 특징이었다. 고전장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글들을 참조. B.H. Slicher van Bath, *The Agrarian History of Western Europe A.D. 500~1850* (London, 1963), pp.40~9; George Duby, *Rural Economy and Country Life in the Medieval West*, trans. C. Postan(Edward Arnold, 1968), pp.34~5.

275) Peterborough 수도원 영지에서는 1250년 경부터 1340년 경 사이에 농민들 사이에 활발한 토지거래가 있었다. 당시 농민들 사이의 토지거래문서는 1960년 Brooke와 Poston에 의하여 간행되었다. C.N.L. Brooke and M.M. Postan, eds., *Carte Nativorum: A Peterborough Abbey Cartulary of the Fourteenth Century*(Northamptonshire Record Society, xx, 1960). 이곳 농민들 사이의 토지거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출고, “13~14세기 英國農民의 土地去來—Peterborough 修道院領을 中心으로—”, 참조.

276) 비상속 자녀의 child portion이나 marriage portion을 위한 토지구입의 문제는 다음 글들에 잘 나타나 있다. 출고, “13~14세기 英國農民의 土地去來” pp.191~2; Janet Williamson, “Norfolk: Thirteenth Century,” pp.93~4, 100~3; Zvi Razi, “Family, Land and the Village Community in Later Medieval England,” p.9.

계에서 나타났던 현상, 즉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르는 현상을²⁷⁷⁾ 보여 주고 있다.

흑사병의 충격으로 상속원칙이 크게 무너지자 일부 빈농들은 판습보유농으로 계층의 상승을 보이고 있으며, 또 일부 판습보유농들은 새로운 토지의 구입이나 임대, 가축사육 등의 경제활동을 통하여 부농층으로 부상하기 시작하였다. 부농층의 형성과 농민의 계층분화 현상은 흑사병으로 구매의 상속판습이 무너진 이후 본격화되는 것으로,²⁷⁸⁾ Cuxham 장원이 보여주는 모습은 그같은 현상의 전형적인 한 예로 생각된다.

277) R. J. Faith, "Peasant Families and Inheritance Customs in Medieval England," pp. 86~7.

278) 농민층의 계층분화가 흑사병 이후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던 것은 흑사병 이전에 그렇게 되지 못하였던 요인들——구입이나 임대 할 수 있었던 토지가 상대적으로 풍부하지 못하였던 점, 일반적으로 축적된 토지가 다음 세대에 child portion이나 marriage portion으로 재분배되었던 점 등——이 사라짐으로써 가능했다. 최근의 글들에서 호웰은 후자의 요인을 강조하고 있다. C. Howell, "Peasant Inheritance Customs in the Midlands, 1280~1700"; *Land, Family and Inheritance in Transition: Kibworth Harcourt 1280~1700*.